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프랑스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프랑스 공화국(La Republique de la France)
면적	643,801 km ² (자료원 : 프랑스 통계청)
수도	파리(Paris)
인구	67,063,703 명 (자료원 : 프랑스 통계청 (2020년 1월 발표))
민족(인종)	켈트족, 라틴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마그레브족, 인도차이나족, 바스크족
언어	프랑스어
종교	가톨릭 및 개신교(52%), 무교(34%), 이슬람교(3%), 유대교(1%), 기타(10%)
기후	서부: 해양성 남부: 지중해성 중부: 준 대륙성 남서부 및 남동부: 산악성
국가원수	대통령: 엠마뉼엘 마크롱(Emmanuel MACRON, 2017년 5월 취임) 총리: 장 카스텍스(Jean Castex, 2020년 7월 취임)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886-06-04 (자료원 : 프랑스 외무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투자보장협정	1979-02-01	투자자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보장 전쟁·내란 등에 의한 투자손실의 보장 국유화 및 수용 (expropriation) 보상 투자수익의 송금 (transfer)보장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 분쟁의 해결	
이중과세방지조약	1981-02-01	거주지국에 포괄적인 과세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대상소득별로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세액공제 원천지국에서 제한없이 과세: 부동산 소득,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관련된 사업이윤, 예술가·체육인 소득, 고정시설과 관련된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 및 종속적 인적용역 소득(단 183일 이상 체재한 경우) 원천지국에서 제한세율로 과세: 배당, 사용료, 이자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주식, 채권양도소득, 연금, 국제운수(항공기, 선박) 소득	1991년 4월 9일 개정

과학기술협력협정	1981-12-18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전문가 정보자료 상호교류 공동연구, 영업 비밀보호, 지적재산권 등 규정	
형사사법 공조 조약	1997-03-08	형사범죄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와 관련해 상호협조 제공,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조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거절하거나 연기 할 수 있고, 사유를 통보해야 함	
사회보장 협정	2006-06-01	단기 체류자의 사회보장 기여금 상호 면제, 장기 체류자에 대한 양국 연금 기여금 납부기간 합산하여 급여수급권 인정	
영화공동제작협정	2007-04-01	양국이 공동제작한 영화는 자국 영화로 간주해 상대국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 수여 가능	
범죄인 인도조약	2008-06-01	형법 및 기타 형사법규를 위반한 범죄인이 자국 내로 도망해온 경우, 외국 의 청구에 응하여 체포, 인도할 것을 약속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	2009-01-01	18~30세 양국 청년이 관광을 목적으로 타방국 체류시 경비충당을 위해 취업을 허용하는 특별 비자협정	

〈자료원 : 한국 외교부〉

한국교민 수

29,000 명 (자료원 : 주프랑스 한국대사관(2019년 12월 발표, 입양인 포함))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2018년 10월 15일, 한국-프랑스 정상회담 개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5개국 순방 프로그램의 첫 국가로 프랑스를 방문했고, 10월 15일 엘리제 궁에서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및 UN 제재 등 한반도 정세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또한, 2004년 수립된 '한국-프랑스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양국이 모두 역점을 두고 있는 청년창업 확대,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 2019년 5월 24일, 제3차 한-불 외교장관 전략대화: 강경화 장관은 OECD 각료 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파리에서 장-이브 르 드리앙 (Jean Yves Le Drian) 프랑스 외교장관과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2018년 한-불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이해해 나가기로 했다. 강 장관은 EU 측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EU 측의 최종조치 재검토 절차에서 자동차용, 가정용 철강 등 우리 관심품목의 철강 쿼터 확대 등이 반영되어 양국 간 호혜적 무역 흐름이 지속할 수 있도록 프랑스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 관련 평가를 교환하고, 대화를 통한 비핵화의 진전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원: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 2019년 6월 28일, G20 정상회의 계기 한불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협력 확대 방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미대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 관해 관심을 보였고,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 정상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약속했다.

-자료원: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경제

○ 2020년 4월 9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불 화상세미나 개최
한불상공회의소 회장의 요청으로 개최된 세미나로, 주한 프랑스 대사, 르피가로 동아시아지역 특파원 등 400여 명의 경제 인사들이 참석했고, 허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초청되어 한국의 코로나 19 극복전략을 프랑스 기업인들과 공유했다. 프랑스 측은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제적 공조와 협력에서 한국의 참여를 당부하며 의약품 수입 등에서의 한국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자료원: 기획재정부-

○ 한국-프랑스 과학기술협력 행동계획 채택
2018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프랑스고등교육연구혁신부는 한국-프랑스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행동 계획을 채택하고 서명식을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민 방문을 계기로 서명한 이 행동 계획은 수년간 지속된 우주분야 협력과 연구자 간 교류를 더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분야 공동연구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신소재, 기후기술 등 양국 간 협력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국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연합(K-STAR)과 프랑스 공과대학 연합(INSA Groupe)은 학생교류 증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의 5개 대학과 프랑스의 6개 공과대학별로 연간 4명, 양국 40여 명의 학생이 상호교류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 한국 기상청과 항공우주연구원, 프랑스우주연구원(CNES)은 위성관측자료를 활용하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우주기후관측소 구축에 대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아울러 연세대와 프랑스 소르본대학교, 국립과학연구원(CNRS)은 UMI급 국제공동연구소를 개소, 운영하기 위한 협약도 체결하였다. UMI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이 지원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는 첫 번째 사례이며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에서 한국의 B2-FUEL 연구실에 연구인력을 파견하고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차세대 에너지 소재 등의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 자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프랑스고등교육연구혁신부 -

문화

○ 한국 문화원 확장 개원
한국 문화원이 2019년 11월 파리의 중심부인 8구 지역으로 이전하고 '파리 코리아 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개원했다. 같은 건물에 한국 관광공사,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함께 들어서 L,A,상하이, 도쿄, 베이징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 코리아 센터이자 유럽 최초의 코리아 센터가 됐다.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의 건물에 다목적 공연장(118석), 대규모 전시실, 도서관, 강의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었다.

2020년 다양한 한-불 아티스트 작품 전시와 온라인 콘서트 등을 열었으며,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인한 프랑스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20년 10월 30일부터 잠정 휴원 중이다.

- 자료원: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	1.1	2.26	1.72	1.32	-
명목GDP (십억\$)	2,472.28	2,591.78	2,780.15	2,707.07	-
1인당 GDP (PPP, \$)	42,440.34	44,114.52	45,893.05	47,222.64	-
1인당 명목 GDP (\$)	38,348.51	40,108.92	42,953.27	41,760.61	-
정부부채 (% of GDP)	97.96	98.42	98.39	99.31	-
물가상승률 (%)	0.31	1.16	2.1	1.17	-
실업률 (%)	10.06	9.43	9.05	8.62	-
수출액 (백만\$)	501,429.11	535,045.05	581,772.95	569,742.4	44,573.32
수입액 (백만\$)	571,924.1	624,011.17	671,434.29	651,145.23	51,772.36
무역수지 (백만\$)	-70,494.99	-88,966.12	-89,661.34	-81,402.83	-7,199.04
외환 보유고 (백만\$)	59,809.76	58,684.39	69,915.78	73,515.68	75,434.75
이자율 (%)	-	-	-	-	-
환율 (자국통화)	-	-	-	-	-

〈자료원 : IMF〉

경제 동향

프랑스는 2019년 1.3%의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2020년 미중무역분쟁으로 인한 제조업 침체의 불안요인에도 실업률 하락과 수출 호조, 높은 구매력이 예상돼 1.3%의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2020년 3월부터 급속히 확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프랑스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1차 확산 시 실시한 1차 락다운정책(2020년 3월 17일~5월 11일까지)으로 필수산업(생필품 및 식료품유통, 담배, 은행 등)을 제외한 모든 상업활동이 전면 중단되어 그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프랑스의 총 상업활동은 35% 감소했고, 건설 분야는 79%, 호텔 및 요식업의 경우 91%까지 감소했다. 경제의 마비는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이 기간의 일시적 실업급여 신청자는 1천

만 명 이상이었다.

1차 확산 이후 잠잠해졌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0년 여름 이후부터 재확산 됐고,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10월 30일부터 2차 락다운을 실시하고 있다. 2차 락다운은 12월 1일까지로 잠정하고 있으나, 확산 동향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기업의 파산, 대대적인 실업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3월 25일, 약 450억 유로 규모의 기업 구제부양책을 발표했고, 4월 10일에는 그 규모를 1천억 유로로 확장했다. 대대적인 기업지원 펀드와 약 3천억 유로 규모의 은행대출 보증 프로그램도 부양책 안에 포함됐다.

2020년 9월 3일에는 1천억 유로 경기부양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의 포스트 코로나 경제개발방향을 제시했다. 친환경 에너지전환 산업, 제조업 강화 및 리쇼어링, 일자리 강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2년까지 프랑스 경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2021년까지 일자리 16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 전망

프랑스 재경부는 2020년 GDP 성장률을 -11%로 전망하고 있다. 2차 유행 전까지 -10%를 전망했으나, 2차 락다운으로 경제적 타격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2월에도 락다운이 계속될 경우, 연말 매출이 큰 코스메틱, 의류, 럭셔리 산업을 중심으로 타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자국지역 중심의 가치사슬 변화와 그린 뉴딜 산업개발을 중심으로 극복해 나갈 전망이다. 전기 자동차, 수소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의 친환경 산업은 현재 프랑스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인 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0년 5월 26일, 80억 유로 규모의 자동차 산업 구제안을 발표하며 프랑스를 2025년까지 유럽 최대의 클린카 생산국으로 만들 목표를 밝힘과 동시에 친환경 차 공장의 프랑스 생산을 의무화했다. 또한, 경제 부 장관은 지난 30년간의 대대적인 자동차 제조 해외 아웃소싱 흐름을 이제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미래형 산업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의 한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일과 유럽 공장 공동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국가 주요 산업의 과도한 해외의존도와 프랑스 국내 제조업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이 증폭되고 있어 정부는 의료, 보건 및 제조 분야에서 자체 생산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리쇼어링이 불가능한 산업분야는 점차 현대화시키며 프랑스 국내 인프라 설립을 확대할 전망이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78,851,327,534
2	스페인	36,644,577,951
3	미국	36,127,096,215
4	이탈리아	35,717,802,271
5	영국	34,445,925,469
6	벨기에	33,166,622,767
7	중화인민공화국	17,705,737,321
8	네덜란드	17,679,116,003
9	스위스	16,921,663,869
10	폴란드	9,075,840,708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77,609,883,805
2	스페인	40,190,987,904
3	이탈리아	39,738,176,639
4	미국	38,414,054,816
5	벨기에	36,488,486,629
6	영국	35,050,751,703
7	중화인민공화국	21,292,094,068
8	네덜란드	19,169,510,975
9	스위스	17,757,571,162

10	폴란드	10,300,172,616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83,212,115,009
2	미국	45,309,601,192
3	스페인	44,323,623,830
4	이탈리아	42,748,242,732
5	벨기에	40,321,519,575
6	영국	38,386,036,179
7	중화인민공화국	24,617,999,072
8	네덜란드	20,863,120,233
9	스위스	18,902,368,421
10	폴란드	11,686,143,453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80,035,711,461
2	미국	47,694,353,782
3	이탈리아	42,824,971,246
4	스페인	42,547,401,657
5	벨기에	39,700,637,928
6	영국	38,196,158,127
7	중화인민공화국	23,381,959,224
8	네덜란드	20,291,065,362
9	스위스	20,098,281,995
10	폴란드	11,655,122,453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94,547,302,109
2	중화인민공화국	51,032,597,802
3	이탈리아	42,036,498,069
4	미국	39,678,969,331
5	벨기에	38,019,212,052
6	스페인	35,769,294,156
7	네덜란드	25,537,080,323
8	영국	21,536,171,274
9	Areas, nes	16,774,281,738
10	스위스	15,660,339,439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97,082,204,604
2	중화인민공화국	55,401,048,054
3	이탈리아	47,044,645,330
4	벨기에	41,279,228,715
5	미국	39,676,918,691
6	스페인	39,422,559,609
7	영국	31,123,286,765
8	네덜란드	28,712,255,964
9	스위스	16,673,595,912
10	폴란드	11,388,001,313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02,253,029,435
2	중화인민공화국	59,036,930,782
3	이탈리아	50,411,392,977
4	벨기에	46,401,582,873

5	스페인	42,899,802,451
6	미국	41,583,151,457
7	네덜란드	30,049,048,841
8	영국	24,279,768,891
9	스위스	17,636,265,861
10	폴란드	12,697,741,746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115,784,350,209
2	벨기에	64,124,961,434
3	이탈리아	53,014,673,440
4	네덜란드	52,453,006,223
5	스페인	47,613,999,877
6	미국	35,180,188,118
7	중화인민공화국	35,174,567,008
8	영국	26,602,149,753
9	스위스	19,364,791,622
10	폴란드	14,153,115,869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2,310,538,469
2	300490	기타	15,710,969,852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1,929,357,498
4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7,525,572,113

5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5,967,572,763
6	330499	기타	5,831,500,584
7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5,611,578,711
8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5,387,657,843
9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5,179,429,038
10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4,897,345,102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0,156,803,514
2	300490	기타	14,862,369,775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2,616,864,881
4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8,687,422,505
5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6,928,334,712
6	330499	기타	6,825,383,507
7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6,421,384,676
8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5,417,308,189
9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5,393,100,282
1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4,968,466,129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39,297,824,270
2	300490	기타	15,411,761,288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3,468,666,747
4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9,198,086,207
5	330499	기타	7,686,868,371

6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7,622,629,883
7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7,512,350,239
8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6,917,647,900
9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6,352,346,497
10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6,058,433,227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0,855,070,558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8,930,963,486
3	300490	기타	16,826,462,107
4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8,837,668,065
5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8,719,778,603
6	330499	기타	8,182,705,002
7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7,259,694,792
8	220421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6,739,528,335
9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6,476,128,803
1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6,371,201,925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20,267,231,414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7,912,794,677
3	271019	기타	13,285,739,539
4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2,253,257,796
5	300490	기타	12,233,354,858
6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11,204,619,752

7	271121	천연가스	7,845,956,171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151,534,086
9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5,741,472,406
1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5,539,451,878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3,841,589,947
2	271019	기타	15,526,962,547
3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14,857,047,940
4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2,693,293,263
5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12,230,034,297
6	300490	기타	11,268,971,333
7	271121	천연가스	9,006,924,436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6,923,268,677
9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6,812,998,178
10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680,565,484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8,517,346,184
2	271019	기타	20,864,490,558
3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14,584,460,522
4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1,734,384,855
5	300490	기타	11,606,268,766
6	271121	천연가스	11,537,694,906
7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9,097,760,511

8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8,170,136,030
9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769,118,481
10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5,818,827,925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4,364,865,421
2	271019	기타	20,124,004,244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5,595,915,745
4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13,441,849,656
5	300490	기타	11,750,220,990
6	271121	천연가스	10,776,787,983
7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0,119,197,908
8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9,742,200,684
9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9,445,901,398
10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248,778,043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6	2,468	5,843	-3,375
2017	2,995	5,746	-2,751
2018	3,541	5,879	-2,338
2019	3,317	5,835	-2,518
2020	2,461	4,880	-2,41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720	140	580
2	7414	전기자동차	182	1	180
3	7481	우주선	0	0	0
4	8352	축전지	327	8	319
5	8311	집적회로반도체	138	245	-108
6	7902	기타기계류부품	24	5	18
7	7420	자동차부품	113	136	-23
8	8121	무선전화기	15	0	15
9	3203	타이어	63	16	47
10	2140	합성수지	90	84	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7411	승용차	440	78	362
2	7414	전기자동차	330	36	294
3	7481	우주선	145	0	145
4	8352	축전지	101	9	92
5	8311	집적회로반도체	96	174	-78
6	7902	기타기계류부품	82	6	76
7	7420	자동차부품	66	140	-74
8	8121	무선전화기	52	0	52
9	3203	타이어	52	15	37
10	2140	합성수지	52	69	-17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5113	가방	3	434	-431
2	2273	화장품	48	463	-416
3	2262	의약품	17	358	-342
4	7112	펌프	10	160	-151
5	8311	집적회로반도체	138	245	-108
6	5183	주얼리	16	177	-161
7	7420	자동차부품	113	136	-23
8	7471	항공기	1	116	-116
9	7472	항공기부품	116	165	-49
10	7216	화학기계	1	27	-27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5113	가방	2	441	-439
2	2273	화장품	38	361	-323
3	2262	의약품	18	314	-296
4	7112	펌프	8	208	-200

5	8311	집적회로반도체	96	174	-78
6	5183	주얼리	11	143	-132
7	7420	자동차부품	66	140	-74
8	7471	항공기	1	131	-130
9	7472	항공기부품	41	120	-79
10	7216	화학기계	1	105	-10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중단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Association Agreement
CU(Customs Union)	산마리노	1991-12-16	2002-04-01	Customs Unions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European Economic Area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European Economic Area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2015-12-31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1995-07-17	1998-03-01	포괄적 FTA 협상 추진 중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A(Agreement)	페로제도	1996-12-06	1997-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1997-12-08	2000-10-01	무역협정 현대화 추진 중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4-06-24	1997-12-01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년 RCA 협상 중단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자치정부	1997-02-24	1997-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중(2017.11.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0.9.)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ariforum	2008-10-30	2008-12-29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아이보리코스트	2009-03-03	2016-09-03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6국	2009-08-29	2012-05-14	잠정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FTA(Free Trade Agreement)	한국	2011-10-06	2015-12-13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서 아프리카21국	2012-04-24		2012년 5월 14일 잠정 적용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나미비아	2012-06-10	2016-10-10	잠정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니카라과	2012-06-29	2013-08-01	잠정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파나마	2012-06-29	2013-08-01	잠정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과테말라	2012-06-29	2013-12-01	잠정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온두라스	2012-06-29	2013-08-01	잠정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코스타리카	2012-06-29	2013-01-01	잠정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엘살바도르	2012-06-29	2013-01-01	잠정발효
TA(Trade Agreement)	에콰도르	2012-07-26	2013-01-01	잠정발효
FTA(Free Trade Agreement)	페루	2012-07-26	2013-03-01	잠정발효

TA(Trade Agreement)	콜롬비아	2012-07-26	2013-08-01	잠정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중미	2012-12-15	2013-03-01	잠정발효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13-12-12	2014-08-04	잠정발효
DCFTAA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잠정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SADC	2016-06-10	2018-02-05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보츠와나	2016-06-10	2016-10-10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발효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03	2017-09-21	잠정발효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2019-11-21	FTA 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두고 추진(현재 투자보호협정 비준 진행중)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2020-08-01	2020년 2월 EU 비준 및 2020년 6월 8일 베트남 비준 완료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	2019-06-28		양측 체결합의(2019년 6월 28일) 메르코수르 각 회원국 별 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 예정이며, 이후 EU 국별 비준 후 정식발효. * 메르코수르 회원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	------------	--	---

〈자료원 : EU TRADE HELPDESK, EU 주재 러시아 상임공관(러시아 무역협정 체결일)〉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ASEAN	2009년 3월 다자간 협상 잠정 중 단합의 2009년 12월 EU- ASEAN 개별회원국 간 양자협정 추진계획 발표.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협정 가능성 타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2012년 4월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2013년	
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협상 중, 협상 개시: 2020년 7월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미얀마	협상 중, 직전협상: 2016년 12월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 잠정보류, 직전협상: 2016년 10월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중, 직전협상 : 2017년 2월	
FTA(Free Trade Agreement)	멕시코	업그레이드 FTA 협상 타결 (2020년 4월 28일)	법률 작업 후 비준 추진 예정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 중, 직전협상: 2020년 6월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협상: 2020년 9월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 중, 직전협상: 2020년 9월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무역부분 현대화 추진 중, 직전협상: 2020년 5월	
FTA(Free Trade Agreement)	영국	협상 중, 직전협상: 2020년 9월 28일~10월 2일	2020년 내 협상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

〈자료원 : EU TRADE HELPDESK〉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EU 내 수입금지 및 규제 품목들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있으며,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 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콩고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에 대한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된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수입금지를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EU는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헬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 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 (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물질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http://iuclid.eu>

- 평가: 서류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물질 공표: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 기업은 생산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갈, 23=그리스 등

◦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 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이번 발표된 제도가 법제화되는 경우, 향후 보조금 관련 EU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우리 기업들의 예의주시가 특히 요구된다.

◦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19년 12월 19일,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배출 제로달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탄소국경조정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세는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현재 집행위가 조세 부과방식 및 WTO 규정 합치성 여부 등 관련 내부평가를 시행중에 있으며 2020년 7월~10월에는 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집행위는 평가결과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021년 2분기 중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동의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은 EU-27 회원국 모두에 즉시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이 아닌 지침(Directive) 형태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EU의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추진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이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EU 탄소국경조정세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하는 경우 유럽의 주요 무역파트너 국가들은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를 선두로 적용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누출이 큰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역외국 수출 기업은 물론 중국, 인도 등 탄소배출 기준이 적은 국가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판매했던 EU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게 돼, 역내 공급망(GVC)이 재편될 가능

성이 있으므로 관련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TBT

기술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표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용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올렸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과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

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치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허용 농도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크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됐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구조가 같으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됐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는 0.5%까지만 안전(비듬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표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는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는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1) 관세율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과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존재한다. 이 밖에도,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EU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관세율은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 특혜세율,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세율, 그리고 기타 3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로 구분될 수 있다.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는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일례로 한국산 제품은 한-EU FTA에 따라 0% 무관세로 수출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전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0년 11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vat-rates_en

◦ 부가가치세(VAT) 관련 신규 내용

2021년 7월 1일부로 역외국 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VAT) 시스템이 변화된다.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22 유로 미만의 소규모 제품에 대해 VAT를 면제해왔으나, 많은 역외국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스마트폰 등 고부가가치 소형제품 판매에 대한 인보이스를 22 유로 미만으로 허위 작성해 VAT를 면제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국 전자상거래 판매 중 25%에 달하는 거래가 VAT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역내생산 제품에만 부과되는 VAT로 많은 EU 기업이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시정해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제품 가격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가 부과될 예정이다. 당초 EU는 2021년 1월 1일부로 동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원국 상황을 고려해 발효시점을 6개월 연장한 7월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3) 관세제도 신규내용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관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보다 통합된 관세동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관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추진 예정인 관세동맹 액션플랜은 크게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여부에 대한 관세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규준수 분야는 현재 시행중인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2021년 하반기 중 추진해 AEO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위조품 등의 역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화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통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Import Control System)을 2024년까지 개선해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원국별 세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관세행정 협력을 위한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021년 중 위기발생 시 대응위한 검토 그룹 설립을 추진해 관세동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대응위한 의료품목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연장(2021.4)

2020년 10월 28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2021년 4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영국은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 EU는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1종의 의료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2020년 1월 30일부터 면제해오고 있으며, 이 같은 조치가 중요 의료물자의 안정적 수급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연장 결정을 내렸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45유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 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업자는 선하 증권(Bill of Landing),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 관세평가 및 세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출 이전에 관세(최고 17%까지), VAT(2018년 11월 기준 20%) 및 특별 소비세(Excise Duty) 등을 완납하고 세관에서 발행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를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2)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

프랑스에 들여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12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현금 보증이나 관리자의 허가에 의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현금 보증을 했을 때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3) 허가통관(Permit Entry)

이미 통관이 이루어졌으나, 통관 후에 다시 포장, 혹은 운송된 것이 발견됐을 때 허가통관을 시행한다.

4) 가수입계(Sight Entry)

물품에 표기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모두 표기되지 않았으면 가수입계를 실시한다.

5)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결정했다.

통관 시 유의사항

- 원산지 및 상품 분류번호 기입 의무: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한-EU FTA 이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 기업은 수출시 무관세 혹은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 6,000 유로 이상 물품 수출 시에는 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

능하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 상품 분류번호 기입 의무: 모든 상품의 통관 서류에는 상품 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해당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된다.
- 수입 시 부가세 면제 등 해양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블루경제법
 - 현지 수입상 및 무역업체들은 일부 건설기업들만이 수입 시 부가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관에 ‘단일 어음지급장소 지정 절차(PDU: Procedure de domiciliation unique)’를 밟기만 하면, 중소기업들이나 외국 무역업체들도 부가세 및 부대 경비 부담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됐다.
 - 기존 PDU 인가 대상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신뢰성이 높으며, 재정적으로 건실하며 정기적으로 많은 물량을 수입하는 기업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소량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수입 시기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계절상품을 수입하는 업체 및 프랑스 법인이 아닌 외국 무역업체(연락사무소 등)도 소정의 절차를 밟아 프랑스 항구나 공항을 통해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통관 시 부담하지 않게 된 것이다.
 - 현재 벨기에의 엔트워프항이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항을 통해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시행, 프랑스가 최종 목적지인 수입상품들의 상당 비중이 이 항구를 통해 프랑스로 우회 수입되고 있어 인근에 소재하는 프랑스의 던커크(Dunkerque)나 르아브르(Le Havre)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향후에는 점차 프랑스로 직수입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물류 산업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이나 동포 무역업체들, 그리고 제3국에 진출한 국내 무역업체들도 프랑스의 이러한 부가세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입 경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Dimotrans France

주소	Les portes de Roissy, 73 Avenue Charles de Gaulle, 95700 Roissy-en-France
전화번호	33 (0)1 74 04 24 70
홈페이지	https://www.dimotrans.com/

◦ PLF international

주소	9 Boulevard de l'Europe, 77380 Combs-la-Ville
전화번호	33 (0)1 60 60 12 12
홈페이지	https://www.plf-international.fr

◦ KFL(한국 업체)

주소	22 Rue Ginoux, 75015 Paris
전화번호	33 (0)1 4947 4919

이메일	doc.air.fr@kflnetwork.com
홈페이지	http://www.kflnetwork.com

◦ Le Havre developpement

주소	19 rue Georges Braque 76085 Le Havre Cedex (르 아브르 항구)
전화번호	33 (0)2 76 40 23 20
이메일	lhds@lehavreseinedev.com
홈페이지	http://www.lehavreseinedveloppement.com

◦ CMA CGM

주소	4, quai d'Arenc 13235 Marseille cedex 02 France
전화번호	33 (0)4 88 91 90 00
이메일	sur.agence@cma-cgm.com
홈페이지	https://www.cma-cgm.com

◦ ITI (한국업체)

주소	100 avenue Charles de Gaulle92200 Neuilly sur seine
전화번호	33 (0)1 40 31 82 82
이메일	fred@itlogist.com

<자료원 : 통관기업 디렉토리>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제약은 없으나 EU 회원국이 아닌 외국인이 국방, 정보기술 등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주요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 투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산업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 2014년 5월 16일부터 유럽연합(EU) 역외 외국기업은 국방 관련 기업, 시설, 장비 사업을 포함해 에너지, 물, 운송, 통신 및 공공보건 6개 분야에 투자 시, 프랑스 경제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프랑스 소재 기업의 지분이나 투표권의 1/3 이상을 인수합병(M&A)하는 외국인(유럽연합 역외국)의 투자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19년 5월부터 발효된 '기업 혁신과 성장촉진 전략 실행법안' 인 팩트 법(loi PACTE)에 민생치안, 공공안전 등 국가안보 등의 산업에 외국인 투자 시 사전허가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우주항공, 공공안전 사업 및 사이버안전, AI, 로봇 사업 등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웹 호스팅 서비스 연구 분야에 투자 시에도 사전허가를 받게 됐다.

-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프랑스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경제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프랑스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재 강화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투자 시 사전허가가 필요한 기존의 프랑스 전략산업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를 추가했다.

○ 신청서 제출: 프랑스 정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경제재무부 재무총국(Direction Générale du Trésor, Bureau Multicom 4 / Télédocus 554. 139, rue de Bercy 75572 Paris cedex 12)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외국인투자허가국 이메일(IEFautorisations@dgtresor.gouv.f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2019년 1월 1일부터는 법안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자뿐 아니라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 또한 사전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투자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 제출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 경영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투자펀드일 경우, 운영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자연인일 경우, 주거지 및 신원 보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외국인이 투자하려는 프랑스 기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기업명, 주소, 회사등록증(K-Bis) 외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 영업실적, 종업원 수, 주요 고객 등

- 투자 방법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총 투자 규모, 투자 전과 후의 지분 및 투표권 배당, 자본금 정산에 대한 정보, 지불방법(외자 이전 여부, 기타 금융수단 이용)에 대한 정보, 투자 전과 후의 자본금 및 투표권 소유 현황

- 기타 모든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한 서류 1부를 경제재무부의 재무총국에 제출한다.

○ 회사 등록: 사전 승인을 얻은 투자자는 회사 등록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 프랑스의 무역투자진흥기관인 Business France 내에 투자담당부서 운영 중

투자인센티브

○ 정부의 감세 정책(프랑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제도)

- 지역경제기여세(CET) 또는 토지세 면세 조건은 지자체가 결정한다.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감세기간(2~5년) 및 수혜규모를 제

외한 감세의 수혜기간은 자동 5년이다.

- 법인세 면제는 방위산업 재편성 지역 및 고용창출 대상지역 내 투자일 경우에만 7년간 가능하다. 재정이 어려운 상태의 제조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2년간 가능하다.

- 사회보장세(고용주 부담) 면제 혜택은 경제 재편성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 내 투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투자지역이 취약지구 (AFR)와 절충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타 투자의 경우, 최고 20만 유로까지 3년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공 대기업이 지역경제발전 장려를 위해 설립한 금융지원회사를 통해서 지원받는 방법도 있다. 이들은 중장기용자, 저리용자, 자기자본출자, 보증이 불필요한 임시 소규모 자본참여 형태의 용자지원을 제공한다.

○ 신생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 프랑스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설립 기업에 대해 법인세, 사회보장세 또는 지방세(토지세, 지방경제 기여세 등)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 조세 감면 대상 기업은 자본금의 50% 이상이 타 기업의 소유가 아니어야 한다. 법인세 감면율은 기업 설립 후 24개월까지는 이익금의 100%, 3년째 해에는 75%, 4년째 해에는 50%, 그리고 5년째 해에는 25%이다.

- 또한 신설 기업들은 지방정부의 심의를 거쳐 지방경제 기여세 및(또는) 토지세를 2년 내지 5년 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기 상태에 있는 지방 제조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24개월 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 받으며 지방정부의 심의를 거쳐 2년~5년 동안 토지세 및 지방경제 기여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법인세 감면율은 첫 해 이익금의 100%, 2년 째 해부터는 이익금의 50%이다.

○ 젊은 석/박사, 교육자, 연구원이 설립한 젊은 대학 기업(JEU)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 프랑스 정부는 석사나 박사가 설립 또는 지분을 가진 설립 8년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젊은 신생기업과 동일한 감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석사, 박사, 교육자나 연구원(최소 5년 이전에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자나 부부)이 소유하거나 총 지출의 15% 이상을 연구비로 지출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 R&D 지원 정책

-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법인세 감세 제도(CIR, Crédit d'impôt recherche)를 운영함으로써 혁신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감세제도에는 최초 신청 기업에 대해 신청 첫 해에는 법인세 감세율 30%(연구개발 지출액 1억 유로에 대해서)를, 1억 유로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액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하는데 해외령(DOM)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50%까지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제한 및 금지(업종)

- 투자금지법은 없다. 다만, 사회 공익을 해치는 사업이나 환경 오염을 유발하여 천연 자원을 파괴하고 국민 건강이나 국가 안보를 해치는 사업은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투자가 불가능한데, 이는 프랑스 국내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2005년 12월 30일 자 시행령(Decret No2005-1739)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 사전 허가 대상 분야는 아래와 같다.

- 투전 놀이

- 개인의 안전을 해치는 산업으로 분류된 분야

-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병원체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또는) 생산활동

- 원격 도청 및 우편물 가로채기 용으로 제조된 장비와 관련된 사업

- 정보기술시스템 및 상품에 의해 제공되는 안전 평가 및 인증 서비스업

- 위험시설 관리기업(민간 또는 공공)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정보시스템 안보분야

- 2중 기술 상품과 관련된 일부 사업

- 암호 풀이 서비스업

- 국방 비밀을 알고 있는 기업이 행하고 있는 사업
- 군사용 무기, 탄약, 화약 및 폭발 물질의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업
- 프랑스 국방부 용 장비공급 또는 조사 계약 체결 기업들의 사업

○ 2014년 5월 14일자 법령(Decret n°2014-479)에 의거, 하기 5개 분야는 프랑스 기업의 지분이나 투표권의 1/3 이상을 인수하는 제3국 직·간접 투자 건은 프랑스 경제 장관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 에너지분야: 전기, 가스, 탄수소, 기타 에너지 원천
- 물: 급수 관련 사업
- 운송: 공공 교통망 및 서비스업
- 전자 통신: 전자 통신망 및 서비스업
- 공공 보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

○ 프랑스는 외국인 투자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로, 외국인 투자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산업분야를 추가하고 투자자 규정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발효된 팩트 법(lois PACTE)에 외국인 투자규제 내용이 포함됐고, 우주항공, 공공안전 사업 및 사이버 안전, AI, 로봇 사업 등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웹 호스팅 서비스 연구 분야에 투자 시에도 사전허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다.

- * 투자금의 2배, 투자기업 매출의 10%, 법인의 경우 5백만 유로, 개인은 1백만 유로 중 가장 높은 금액의 벌금 부과
- * 허가를 위조한 경우 2년 형, 벌금 30,000 유로

- 법안에 해당되는 투자자의 범위는 프랑스에 설립된 회사의 직접/간접 경영자, 프랑스 본사인 회사의 지사 일부 혹은 전체의 경영자, EU 이외 국적인 경우, 자본금의 33.3% 이상 혹은 투표권을 가진 자였으나, 2020년 1월부터 해당 법령의 규제가 다음과 같이 강화됐다.

- * 투자자의 범위: 자본금의 33.3% 이상 투자자 → 25% 이상 투자자
- * 해당산업분야 추가: 정치전문 혹은 종합정보 언론사(온라인 포함), 식품 안전, 에너지 저장, 양자물리기술 산업

○ 2020년 4월 27일 경제부 장관은 프랑스 전략산업확대 및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비유럽인)의 투자제재를 '당분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프랑스 주요 기업들이 위기를 맞으면서 마련된 일종의 프랑스 경제 구제정책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프랑스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를 기존의 최대 25%에서 10%로 축소시켰고, 10% 이상 투자할 경우 프랑스 정부에 허가를 의무화 했다. 또한, 투자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에너지, 통신, 농업, 우주, 항공, 교통, 수자원, 의료 등의 기존 프랑스 전략산업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를 추가했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클러스터 지원정책

프랑스는 클러스터 지원정책을 통해 특정입지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항공우주, 자동차, 바이오테크놀로지, IT 등 분야의 프랑스 기업 및 외국기업으로, 국내외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2019년~2022년까지 주요 연구개발 프로젝트 및 혁신 플랫폼 지원을 위한 4억 유로 기금을 마련, 주요 테마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한다.

2) 유럽연합 내 지역산업개발 보조금(PAT) 지원

유럽연합 회원국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산업개발 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다. 산업활동의 개발, 생산지역의 다변화 또는 발전, 공법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여야 하고, 기업이나 지사를 인수하는 것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고용창출 인력 수 및 투자액에 따라 결정된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1인 고용 창출 시 1만 5,000유로까지, R&D 및 혁신분야는 고용창출 인원 1인당 최고 2만 5,000유로까지 지원된다.

○ 지역개발보조금(Prime d'aménagement du territoire: PAT) 지원 대상 및 한도

- 분류: 제조업, 서비스 업
- 프랑스 내 대상 지역 AFR(낭뜨, 투르 등 지역활성화 지역)
- 지원대상 :

① 신규기업설립: 20명 고용창출 및 300만 유로 투자

② 사업 다양화, 확장* 또는 근본적인 공정 수정(*대기업 제외): 20명(기존 종업원 수의 최소 50%), 40명 이상의 고용창출 및 300만 유로 투자 또는 1,000만 유로 투자

③ 인수(M&A): 지속적인 구조적 방법에 의한 기업 경쟁력 회복 및 시장 다변화 기여, 괄목할 고용 유지, 50명 이상의 고용 구제 및 300만 유로 투자 20명 이상 고용 창출 및 300만 유로 투자

- 지원금액: 지역*과 기업규모 등에 따라 지원비율이 다르며, 1개 일자리 창출당 최대 1만 5,000유로 지원(동업자 계좌에 예치된 자본금 한도 내), 프로젝트에 따라 1명당 최대 2만 5,000유로 지원(*주: 1인당 소득, 실업률 등을 기준으로 낙후/준낙후/일시적 낙후지역 3개로 구분)

제조 및 서비스 분야의 경우, PAT의 수혜 대상은 신규 사업에 3년 동안 300만 유로 이상의 투자 및 2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경제 및 산업 또는 중요한 기술적 이익이 있는 연구개발 또는 혁신분야의 경우, 수혜 대상은 75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한 기업이다. 대기업의 경우는 5,000만 유로 이상의 투자 및 2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지원 조건이다. 건물 투자액 비중은 총 투자액의 25%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형태는 환불대상의 무이자 및 비과세 선불 융자이다. 2년 거치 5년간 매 분기별로 상환해야 한다. 취약지구 내 투자일 경우 건물 투자 비중은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60%까지이며 여타 지역 내 투자일 경우, 중견기업은 3년간 20만 유로,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30%이다.

산업단지

○ 소피아 안티폴리스(Sophia Antipolis)

규모	2400 ha
위치	프랑스 남부도시 Nice 인근
임차료	N/A
관할기관 및 연락처	1) Fondation Sophia Antipolis Place Sophie Laffitte BP 217 - 06904 Sophia Antipolis Cedex 전화번호: 33 (0)4 9296 7800 Email: mariani@sophia-antipolis.org 2) TEAM CÔTE D'AZUR Office of promo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Alpes-Maritimes 400 Promenade des Anglais - BP 3185 06204 NICE CEDEX 3 - FRANCE 전화번호: 33 (0)4 92 17 51 51 팩스번호: 33 (0)4 93 80 05 76 웹사이트: http://www.investincotedazur.com
비고	과학기술교육단지

○ 클러스터 파리-사클레이(Cluster Paris-Saclay)

규모	총 649ha, 세 구역으로 나뉨
위치	파리 남동쪽 근교 Saclay
임차료	N/A
관할기관 및 연락처	Etablissement public management Paris-Saclay 6, boulevard Dubreuil 91400 Orsay 전화번호: 33(0)1 64 54 36 50 팩스번호: 33(0)1 69 86 11 48 Email: contact@oin-paris-saclay.fr
비고	과학 기술 산업 클러스터

○ 시멕 인더스트리 (SIMEC Industrie)

규모	N/A
위치	프랑스 북동쪽 (독일과의 국경 부근)
임차료	N/A
관할기관 및 연락처	SIMEC Industrie 주소 ; ZI - Route du Marienthal, 67240 Bischwiler, Alsace, France 전화번호 ; 33 3 88 06 42 42 팩스 ; 33 3 88 06 42 39 웹사이트 ; https://simec-industrie.com/ 메일 ; info@simec-groupe.com
비고	산업용 전기 유지 및 보수 전문 기업들 입주

<자료원 : 홈페이지: <https://www.sophia-antipolis.org/> >

주요 지역별 여건

○ 일 드 프랑스(le de France)

- 면적: 12,012km²
- 인구: 1,221만 명
- 주도: 파리 (Paris)
- 주요 기관: 정부, 상원, 하원, 대법원 등
- 주요 산업: 서비스, 운송, 금융, 호텔 등 관광산업, 식당, 부동산, 정보 커뮤니케이션 등과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 등의 3차 산업이 지역 산업의 80% 이상을 차지, 유럽에서 가장 큰 항공기 부품 산업 지역(Safran, Dassault, Thales, Airbus, ASL 등 대형 항공 기업의 부품생산, 항공 연구소 포함 약 2000개의 기업 상주)
- 비고: 2019년 415개의 해외기업 투자프로젝트 유치, 9,660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전년 대비 51% 증가)
- 2019년 최대 투자국가는 미국(24%), 영국(12%), 독일(10%)

* 자료: Choose Paris Region, 2020년 5월 발표

○ 오베르뉴-론-알프스(Auvergne-Rhône-Alpes)

- 면적: 69,711km²
- 인구: 6,622만 명
- 주도: 리옹(Lyon)
- 주요 산업: 기계, 전자기기, 에너지, 제약, 의학기술, 제조, 고무/타이어(미쉐린 본사), 플라스틱, 친환경기술 등. 대형 유통업체 카지노 Casino, 르노 트럭 Renault Trucks, 버스 제조업체 Iveco, 사노피 Sanofi Pasteur, 에비앙 Evian 등의 대기업들이 상주해 있음.
- 비고: 면적과 인구규모 면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프랑스 국내 GDP 규모 2위, 유럽 도시 중 4위

◦ 옥시타니(Occitanie)

- 면적: 72,724km²
- 인구: 583만 명
- 주도: 툴루즈(Toulouse)
- 주요 산업: 농업(프랑스 제1의 바이오 농업 지역), 와인, 항공산업(툴루즈 항공우주밸리, 에어버스 그룹 상주), R&D(바이오 산업, 항공 산업)
- 비교: Airbus, Airbus operation, Royal Canin 등의 대기업 상주, 유럽 제 1의 항공산업도시

◦ 르 아브르(Le Havre)

- 면적 : 46.95 km²
- 인구 : 약 17.24만명
- 주도 : 오토노르망디(Haute Normandie) 지역의 센마리팀(Seine-Maritime) 주
- 주요 산업 : 이전에는 항공업과 해상풍력발전으로 유명했지만, 현재의 산업분야는 자동차, 석유 화학 제품을 비롯한 화학 산업 등 여러분야로 발전됨.
- 비교 : 지역 최고의 산업 고용주는 르노(Renault)이며, 화학 산업 분야가 그 뒤를 이음 (르아브르 지역에만 총 28개의 산업 시설이 플라스틱 생산).

◦ 모젤(moselle)

- 면적 : 6,216km²
- 인구 : 약 103.6만명
- 주도 : 메츠(Metz)
- 주요 산업 : 이전까지는 중공업, 제철업으로 지역경제를 책임졌으나, 1900년대 말 산업위기를 맞으며 과학기술에 주력, 현재는 카테놈(Cattenom) 원자력 발전소로 유명함.
- 비교 : 독일과 밀접한 국경 부근에 위치해 두 나라의 문화가 혼합된 경향을 보임.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45,364.69	23,077.22	24,832.53	38,185.1	33,964.71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53,217.91	64,847.89	35,984.68	105,635.53	38,663.13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8	137	15	422,796	158	488,249
2019	137	25	2,027,336	153	1,774,668
2020	35	4	144,723	44	259,63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22	7	17,465	22	16,725
도매 및 소매업	89	3	28,750	100	28,376
숙박 및 음식점업	1	1	171	1	79
정보통신업	11	0	235,599	14	235,738
금융 및 보험업	3	0	2,281	9	72,305
부동산업	4	2	138,184	5	134,68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7	2	346	7	34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32	6	30,507	32	30,408
도매 및 소매업	58	6	8,345	67	8,396
숙박 및 음식점업	4	2	480	5	496

정보통신업	6	1	17,651	10	4,357
금융 및 보험업	6	2	429,335	14	475,017
부동산업	21	6	1,539,814	16	1,255,1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2	845	2	50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	0	359	7	359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7	1	133,124	8	133,772
도매 및 소매업	19	2	5,562	23	5,499
숙박 및 음식점업	2	1	1,832	3	1,849
정보통신업	3	0	2,038	4	2,397
금융 및 보험업	2	0	2,000	3	12,313
부동산업	0	0	0	1	103,63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	0	167	2	16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KEB 하나은행 파리지점

진출연도	1974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업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주)하나은행

○ 대한항공 파리지점

진출연도	1975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송, 물류
취급분야	항공 운송업
모기업명	대한항공

○ LF Corp 프랑스 법인

진출연도	198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패션
모기업명	LF Corp

○ 삼성전자(삼성메디슨 통합) 프랑스 법인

진출연도	198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전자제품, 의료기기
모기업명	삼성전자

○ LG전자 프랑스 법인

진출연도	198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이동통신, 가전제품
모기업명	LG전자

○ 아모레퍼시픽 프랑스 법인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생산,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향수, 화장품
모기업명	아모레퍼시픽

◦ 동부 대우 전자 프랑스 법인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텔레비전, 냉장고 유통업
모기업명	동부 대우 전자

◦ 현대상선 파리지점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송, 물류
취급분야	해운업
모기업명	현대그룹

◦ 한국 타이어(주) 프랑스 법인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한국 타이어(주)

◦ 제일기획 프랑스 법인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광고, 홍보
취급분야	광고
모기업명	제일기획

◦ 기아 자동차 프랑스 지점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자동차
모기업명	기아 자동차

◦ 범한 판토스 프랑스지점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지점
업종	물류, 운송
취급분야	육로 운송업
모기업명	범한 판토스

◦ 현대 중공업 프랑스 법인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공공건설
모기업명	현대그룹

◦ 이우 테크놀로지 프랑스 법인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의료장비
모기업명	이우 테크놀로지

◦ 금호 타이어 프랑스 법인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금호 타이어

○ 아시아나 항공 파리지점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송, 물류
취급분야	항공운송업
모기업명	아시아나 항공

○ 한국 수력-원자력 프랑스 법인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생산법인/연락 사무소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우라늄
모기업명	한국 수력-원자력

○ KCC France 프랑스 법인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실리콘
모기업명	KCC FRANCE

○ 현대 자동차 프랑스 법인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자동차
모기업명	현대그룹

○ EXR Korea Co. Ltd. 프랑스 법인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의류
모기업명	EXR Korea Co. Ltd.(성우 하이텍 계열사)

○ TJ Media Co. Ltd. 프랑스 법인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Dream 반도체
모기업명	TJ Media Co. Ltd.

○ CSLI Co. Ltd. 프랑스 법인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Systran 소프트웨어
모기업명	CSLI Co. Ltd.

○ Investor Group 프랑스 지점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지점
업종	부동산업
취급분야	Docks Lyonnais빌딩
모기업명	Investor Group

○ 이노션 월드와이드 프랑스 지점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작
취급분야	광고
모기업명	이노션 월드와이드

○ 파리바게트 파리지점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제과류
모기업명	SPC 그룹

○ 두산중공업 프랑스 지점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취급분야	엔지니어링
모기업명	두산중공업

○ Jennifersoft 프랑스 법인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서비스 법인
업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취급분야	연구개발
모기업명	(주)제니퍼소프트

○ 다산네트웍스 프랑스 법인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초고속 인터넷 통신장비
모기업명	다산네트웍스

◦ 네이버 프랑스 SAS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취급분야	연구 및 스타트업 지원
모기업명	네이버

◦ HDX Corporation 프랑스 법인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영상의료시스템, 치과용 의자
모기업명	HDX Corporation

◦ Cell Biotech 프랑스 법인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바이오 응용기술 의약품
모기업명	Cell Biotech

◦ (주)한국선급 파리 사무소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운송, 물류
취급분야	해운업
모기업명	(사)한국선급

◦ Louis Quatorze Paris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가죽제품
모기업명	Louis Quatorze

◦ LS전선 파리지점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선
모기업명	LS전선

◦ 바디프렌드(Bodyfriend) 유럽법인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고급 안마의자
모기업명	바디프렌드(Bodyfriend)

◦ SK Funtional Polymar

진출연도	202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기능성 폴리머 생산
모기업명	SK 종합화학

◦ Semics Europe

진출연도	2020
진출형태	해외지사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기타 기계장비 및 장비 제조
모기업명	Semics

〈자료원 : Allo Paris 2020(재불한인 디렉토리), 파리무역관 자체 조사자료〉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법인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아울러 유한책임회사(Sarl), 주식회사(SA) 등을 세울 경우 출자금액 안에서만 제한적인 책임을 진다. 법인은 현지 상법상 본사 조직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조직체이며, 따라서 조세 당국과의 마찰이 비교적 적고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시장 사항에 맞게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경영 의사의 신속성, 효율성 면에서 지사를 앞선다. 그러나 현지 법 규정이 적용되고 상업등기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처음 설립하는데 상당히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해외 기업이 프랑스에 설립한 자회사는 프랑스 회사와 동일하게 프랑스 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지 법인 형태로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1인 유한책임회사, 개인기업, 단순주식회사(SAS), 1인 단순주식회사(SASU), 생산자협동조합(Scop), 협회(Association)가 있다. 외국법(모회사)의 적용을 받는 외국법인 형태로는 지점(지사) 및 연락사무소가 있다.

○ 현지 법인: 대표적인 현지 법인으로는 주식회사(SA)와 유한책임회사(SARL)가 있다. 회사운영 방식에 있어서 주식회사(S.A.: Societe anonyme) 형태의 자회사는 적어도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이사의 국적은 무관하며 거주에 대한 조건도 요구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매일 회사를 관리할 일상 운영권을 1인 또는 다수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SARL: Societe a responsabilite limitee) 형태의 현지 법인 자회사인 경우에는 1인의 이사에 한해 위임권을 부여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설립절차가 종결됐더라도 회사 상업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표이사나 직원의 개인적 책임은 상업등기번호가 발급된 후에 면제된다. 자회사는 프랑스 회계법에 의해 회계를 집행해야 하고 연차 회계 보고서를 작성, 공개 발표해야 한다. 프랑스 규정상 연차 회계보고서 1부는 프랑스 중앙은행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지사

지사는 본사에서 독립된 별개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한 부분이며, 본사에 적용되는 법(본사 소재 국가법)이 지사에도 적용된다. 중요한 계약사항은 본사 명의로 해야 하므로 본사 통제가 용이하며, 본사가 자본을 출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본사가 주요 계약에 일일이 승인을 해야 하므로 유연성과 신속성이 부족하고, 지사가 업무를 잘못할 경우 본사가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부담이 있다. 아울러 창출 수익에 대해 어디까지 현지 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현지 조세당국과 마찰 가능성이 있다. 지사 역시 상업등기부 등록이 필요한데 본사 관련 한국 상업등기부 내용을 모두 현지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지사는 현지법인처럼 지사 자체의 연차 회계보고서를 발표할 의무가 없는 대신 본사의 연차 회계보고서가 프랑스 공식 언어(불어)로 발표돼야 하며 1부는 프랑스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사의 연차 회계보고서는 해당국 회계법에 의해 감사, 공인돼야 한다. 따라서 본사의 회계 기밀이 노출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 지사 등록: 독립지사의 경우 상업 등기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등기지점이라 통칭된다. 비독립 사업장은 등기가 불필요하므로 비(非)등기 지점이라 불리며, 관할 시청 내 사업자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독립지사는 모기업(본사)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외국기업의 지사인 경우 모기업에 적용되는 외국법에 종속된다. 모기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모기업과 동일한 회사명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회사명에 일정 문구를 추가하는 것('프랑스 지사' 또는 '파리 지사')은 가능하다. 외국기업의 등기지사는 관할지역 법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모기업의 설립 인정서와 같은 필수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는 공증을 받기 전 모기업 이사 전원의 서명이 기재돼야 한다. 만약 외국에서 서명을 한 경우, 외국 주재 프랑스 공관으로부터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프랑스에 설립된 외국 모기업의 등기지사는 권한을 위임 받은 지사장을 선임한 후 모기업을 대신해 직접 거래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반면 비등기지점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불가하다. 독립지사의 경우 인보이스 발행을 비롯한 상업적 계약이 가능한 반면, 비독립 사업장의 경우 본사를 대신해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인보이스는 본사 이름으로만 발행 가능하다. 그러나 지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채무자는 어디까지나 본사이다(본사가 법인이 아닌 개인일 경우에는 당해 개인).

○ 경영조직 구성 여부: 지사는 법인자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사장 이외에 별도의 경영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노동자 협의회는 합자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에 의해 인정되며, 주로 회사 경영상의 조언을 구하거나 직원들에게 경영 관련 정보를 제

공하는 기능을 한다.

◦ 기타 사항: 지사의 경우, 본사가 자본을 출자할 필요가 없다. 본사가 영업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지점은 연락 사무소에 비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반면 영업활동으로 인해 적절한 매출액을 창출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즉, 지점 설립 후 몇 년 동안 이렇다 할 매출액을 창출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손실만 발생할 경우, 프랑스 세무서의 강력한 추가 문의와 세무조사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프랑스 진출 시 지사보다 법인을 선호하는 편이다. 지사 설립 및 상업등기부 등록에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 설립할 지사가 한국 대기업의 지사로 등록돼야 하는 경우, 본사와 관련된 한국 상업등기부상의 내용을 모두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지 법인과 달리 책임부담이 자본금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사 설립보다 법인 설립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본격적인 영업 개시 전 현지 시장 상황을 가볍게 ‘응수 타진’하고 싶을 경우 적합한 형태이다. 연락사무소는 상업등기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관련 구비서류를 기업창구(Guichet d'entreprise)에 제출한 후 기업번호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연락사무소의 경우라도 사무소 등록을 위해서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 신고만 마치면 되므로 세가지 형태 중 설립이 가장 간단하다. 그러나 연락사무소는 영업 및 거래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 대부분 법인이나 지사 설립 전 시장 조사, 고객 접촉, 연구 개발 또는 A/S 활동을 위해 설립된다.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 비영리 지점을 의미하며, 공급선 및 바이어 등 주요 고객들의 접촉 포인트, 산업 동향 등의 각종 시장 조사, 홍보 및 섭외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별한 설치 절차는 없고, 하기 구비서류를 프랑스 관할지역 상공회의소 기업수속센터(CFE)에 신고하면 프랑스통계청(INSEE)로부터 회사등록번호(SIREN 및 SIRET)을 부여받는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경우, 본사가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진다. 대표는 현지 거주자이거나 유럽연합 국민이거나 OECD회원국 국민 또는 프랑스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현지 직원을 둘 경우, 사회보장기관(URSSAF)에 신고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관할지역 기업세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할 경우에는 회사등록증(K-Bis)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사등록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재 지역 사회보장기관에 신고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개설비용 및 운영비에 포함된 부가세(정상 세율 20% 등)는 환불 요청할 수 있다. 연락사무실에 부과되는 주거세(Taxe d'habitation)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지닌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프랑스에서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보다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필수로 두어야 한다. 이사회는 감사 1명을 포함해서 최소 3명 이상 18명으로 구성돼야 하며, 경영위원회에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주식양도의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장 또는 국제화를 목표로 하는 잠재력이 큰 기업에 유리하다. 37,000유로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자본금이 225,000유로 이상일 시, 상장이 허용된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해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한다. 발기인은 2~3명(최소 1명은 상근 의무)이며 의결권은 최고 경영자(일상적 경영문제)에게 있으며 회계 및 결정사항은 총회에서 한다. 주식 양도는 회사 정관이나 주주 동의로 가능하다. 경영인의 책임 한도는 출자액 한도 내(경영 과실 시에는 제외)이다. 회장과 사장은 봉급자로 분류되나 실업보험 제도에서는 제외된다. 경영자 보수를 법인세 대상 이익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설립 5년 미만 시, 법인세 대신 조건부로 소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에는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가 있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 책임은 초기 발기인인 1명에 한하며, 회사 운영 결정사항에 대해서 문서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개인기업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데, 특히 회사 자산과 개인 자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개인세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피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2인 이상 복수의 동업자로 설립된 민간 회사로 각 동업자는 각기 투자한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으며, 동업자의 권한은 일정 조건 내에서만 양도가 가능하다. 일정 조건 하에서 부부가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회사 존속기간은 무한정이지만 정관에서 회사의 존속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프랑스 상법 제L232-22조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재무제표(comptes annuels), 연결계산서류(rapport de gestion), 영업보고서(comptes consolidés), 감사보고서(rapports des commissaires aux comptes), 의사록(délibération de l'assemblée générale) 등 일부 회사 관련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동법 제L232-23조에 의하여 프랑스 주식회사(société par actions)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회사가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분리합병을 진행할 경우, 프랑스 상법 제L236-6조 및 동법 제R236-2조에 의하여, 주주총회30일전 회사 소재지의 등기소에 분리합병계획(projet de fusion ou de scission)을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사의 경우 설립 절차가 간소하고 적은 자본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와는 달리, 개인 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무한 책임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사업자 개인은 물론 사업자의 가정 자산까지 모두 회사 부채 지불에 사용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채권발행이나 상장 등 재무적인 유동성이 없어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합명, 민사, 익명회사 등

합명회사(nom collectif), 민사회사(civile) 및 경제이익단체(GI: group ement conomique) 등이 있는데, 이 형태는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파트너들 간의 무한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선택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저 자본 요건이 없으며, 구조상 유연성이 크고 회계 투명성도 높아 자회사로서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수한 기업형태인 익명회사(participation)는 건설업, 공연예술 및 출판 부문에서 채택되고 있다. 이 기업형태는 설립이 간단하고(법인사업자명부 등록 불필요) 법적 고시가 필요 없다. 2개 이상의 유럽연합 회원국에 소재한 기업은 유럽회사 지위를 선택할 수 있다. 유럽 회사의 지위를 선택하는 회사는 동일한 규제사항과 통일된 경영 체계 및 재무 정보 공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Cabinet Arche

전화번호	33 1 4335 8410
주소	Tour Montparnasse, 33 Avenue du Maine 75015 Paris
홈페이지	http://www.archelegal.com
이메일	james.kim@archelega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변호사 김중호
비고	법무법인

◦ MALESHERBES AVOVATS

전화번호	33 1 5856 2700
주소	97, boulevard Malesherbes 75008 Paris

홈페이지	https://www.malesherbes-avocats-associes.com
이메일	contact@avocats-malesherbe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변호사 김지혜
비고	법무법인

◦ AVENS

전화번호	33 1 4067 8724
주소	67, boulevard Haussmann 75008 Paris
홈페이지	http://www.avens.f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변호사 김갑수
비고	법무법인

◦ SLG Expertise comptable

전화번호	33 1 4225 5364
주소	10 Rue Pergolèse, 75016 Paris
홈페이지	http://slgexpertise.fr
이메일	accueil@slgexpertise.fr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회계법인

◦ Mandel et Associés

전화번호	33 7 81 23 34 66
주소	47 Rue saint-andré des arts 75006 Paris
홈페이지	https://www.mandel-office.com/about-us-2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변호사 마정현
비고	상법, 회사법 담당 한국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 Novaa Expertise

전화번호	33 1 53 83 78 30
주소	15 rue auber 75009 Paris

홈페이지	https://www.novaa-expertise.com
비고	회계법인

○ 손승연 회계사

전화번호	33 6 31 25 05 30
주소	63 rue de villiers 92208 Neuilly sur Seine
홈페이지	https://www.pwc.com
이메일	paul.shon@pwc.com

○ 육촌 파리지사

전화번호	82 2 528 5958
이메일	hcch@yulchon.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조현철

〈자료원 : 프랑스 교민 디렉토리(Allo Paris 2020), 파리지사 자체 조사자료〉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청산 및 철수의 개요

회사의 청산은 해산을 전제로 하며, 법인의 모든 법률적 관계를 종료시킨다. 청산은 해산 후 법적절차에 따라 회사의 채권채무 정리 및 회사의 잉여재산을 처리하며, 최종적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해 회사 법인자격이 소멸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청산 원인으로는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영업기한의 만기 혹은 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해산 사유, 회사 합병 혹은 분리,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등이 있다. 한편, 기업의 '청산'과 '파산'은 엄연하게 다른 의미이다. 청산은 기업이 채무를 정리하고 스스로 회사를 정리하는 반면, 파산은 법원에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프랑스 법인 철수 및 정산 절차는 해산, 청산, 말소 3개 단계로 이뤄진다.

- 해산(Dissolution)은 기업의 청산과 법인격 소멸을 목적으로 하며, 주주총회 시 주주 75% 이상(2005년 8월 4일 이후에 창립된 기업은 전체의 2/3이상 찬성 필요) 해산에 찬성하면 해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청산(Liquidation)은 법인의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해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말소(Radiation)는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해 주주에게 배분한 후 상업등기소 등기부에서 법인 등록을 말소하는 행위이다.

청산 절차를 통해 회사를 철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 계약, 특히 고용 계약과 관련해 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노조가 구성돼 있는 사업장의 경우 청산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노조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실업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반드시 사전 통보해야만 한다. 주주들이 회사를 청산하기로 결의한 이후 청산인을 임명하고, 임명된 청산인은 청산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회사의 청산 절차가 시작됐음을 공개해야 한다. 모든 부채의 변제가 끝난 후 남은 잔여 자산은 주주들에게 분배된다. 자산이 남아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회사 등록부에서 말소될 수 있다. 청산 과정에서 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자본 이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청산 수익과 주당 투자액과의 차액 또한 주주들이 납세 의무를 지는 항목이다. 단, 청산수익의 분배분에 대한 원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회사가 채권자들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부채의 일부만을 변제하게 됐을 경우, 채권자의 권리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부분도 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도 다시 계산해 세무 당국에 정산해야 한다.

2)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① 해산

해산은 법인 소멸의 원인이 되나 청산절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법인은 소멸하지 않고, 기업은 영업능력은 잃지만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다. 회사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서 투표 참가 자본 75% 이상(2005년 8월 4일 이후에 창립된 기업은 전체의 2/3이상 찬성 필요)이 해산에 동의하면 해산절차를 개시한다. 해산 결의는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유효하나, 해산 결의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의 해산과 함께 대표 이사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법인이 해산을 결정하면 청산인이 세무서에 등록된 원본과 동일하다고 증명한 사본을 하기 서류들과 함께 상공회의소의 기업행정수속절차센터(CFE)에 제출해야 한다.

- 법인의 수정 내용 신고서 양식(M2)
- 수정 내용을 공시한 신문(관보 등) 1부(유한회사의 경우, 공시 확인서 사본도 가능)
- 청산인의 무범죄증명서(소정의 양식) 원본
- 대표 이사의 현 주소로 돼 있는 유효한 신분증 앞뒷면 사본
-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법인 등록증(상업등기소) 초본
- 청산인이 서명한 위임장(임명장)

상업등록소의 해산 소요 비용은 195.39유로이다. 만일 파리 외외의 지역에 자회사가 있을 시에는 46.48유로가 추가된다.

해산 개시 후 기업은 기업명 뒤 'e.L(en Liquidation - 청산 중)' 또는 'e.D(en Dissolution - 해산 중)'이라는 단어를 표기해 법인이 청산 또는 해산 중이라는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청산

청산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청산인을 임명하고, 청산인은 대외적으로 청산기업을 대표한다. 대부분 대표이사가 청산인 역할을 부여받지만 제3자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산인은 공증형식을 거치면서 상업등기소 신고를 통해 등기 법원에 대해 자신이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실과 관련해 형법, 영업법 또는 직업법에 비추어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 이는 기존 대표이사가 청산인으로 선임된 경우도 동일하다.

청산인은 아래 사무활동을 통해 기업 자산을 현금화한다.

- 현존 사무의 종결
-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

아울러 공증인은 채권자에게 법인의 청산 개시를 공시해야 하고, 1년 내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아울러 채권신고 요청을 전자 연방광고에 3회에 걸쳐 공고해야 한다. 청산인은 모든 채권을 변제한 후 현금화한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한다.

③ 말소

법인 채권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관할지역 상공회의소 기업행정수속절차센터(CFE)에 하기 소정의 말소 신고양식을 통해 신청한다. 신청 시기는 3번째 채권신고 요청 광고 후 최소 1년 후여야 한다.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소정의 법인의 말소 신고 양식: M4는 법인용이며 P4는 자영업용
- 외국기업의 현지법인의 경우, 법인장이 서명한 말소 행정절차 위임장(임명장)

등기소는 채권 및 자산 존재 여부 등을 세무서 등과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법인의 소멸을 등기한다.

청산이 종결된 이후에도 회사의 장부와 문서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청산인은 회사 종결 신청 시 누가 이 문서를 10년간 보관할지도 지정해야 한다. 말소 소요 비용은 약 15유로이다.

3) 파산

법인의 파산은 파산법으로 규정된다. 기업, 채권자 혹은 검사는 기업의 파산신청을 관할 지방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기업에게는 파산신청 제출 후 신청 확정까지 45일의 기한이 주어진다, 지방법원은 대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해 기업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때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방법원은 1명 혹은 그 이상의 파산관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법인의 모든 자산은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청산되며, 채권자들은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청구를 해야 한다. 모든 채권자들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데, 선취특권을 가진 채권자와 우선채권자는 우선적으로 채무변제가 가능하다.

선취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유담보 채권자라고도 하며,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담보를 잡아둘 수 있으며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 판결이 나더라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특정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선취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무변제를 위해서 냉각기를 설정해 모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활동을 약 두 달(추가로 2달 더 연장 가능)간 중지할 수도 있다. 냉각기 이후, 선취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우선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파산관재인은 저당 잡힌 자산에 대한 채권 청구를 보류할 수 없다.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라면, 유담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 경매를 통해 자신의 청구권이나 담보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우선채권자는 유담보 채권자와 달리 담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선채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우선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산 비용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채무를 상환 받을 수 있다. 법률상 명시돼 있는 우선 조건은 물론 법률상 명시되지 않은 계약상 우선 조건 모두 우선채권자로 명명할 수 있는 기초 조건으로 작용한다. 무담보 채권자들은 우선적으로 채권변제를 요구할 권리

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앞서 말한 유담보 채권자 및 우선채권자의 채무 상태가 모두 청산되고 나서야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지급 정지

기업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는 무담보 부채에만 적용되며, 선취특권을 가진 채권자와 우선채권자는 지급정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채무자는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임시로 법원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와 채무자 내역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급정지 기간 내에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설계방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파산 신청의 경우와 유사하다.

법원은 전체 비우선 채무의 1/4 이상에 대한 채권자들의 반대가 있거나, 채무자가 지급정지 기간 동안 채권자의 권리를 훼손할 협의가 있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전혀 변제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지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위의 세 경우에 의해 지급정지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대부분 파산절차를 시작하도록 명령한다. 지급정지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이행했을 경우, 법원이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설계 방안이 법원에서 통과될 경우, 마지막으로 파산에 의해 지급정지가 폐기될 경우 정지된다.

5) 지점 철수

지점의 기업 해산과 청산은 기업의 본부에서 주관해야 하며, 상공회의소의 상업 등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고용주의 사인이 기재된 상업 등기 취소 신청서와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을 지역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한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0.85유로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00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50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2.01
비고	2020년, 세전 기준				

<자료원 : Etudiant(교육전문 매거진), INSEE(프랑스 통계청)>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프랑스의 고용계약제도는 크게 고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은(우리나라의 정규직에 해당) CDI 계약과 고용기간이 정해진(우리나라의 비정규직에 해당) CDD 계약, 두 가지로 나뉜다. 비정규직의 계약은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총 기간이 18개월을 넘을 수 없다.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직원의 병가, 휴가 혹은 업무의 확장 등으로 인한 '단기적' 일자리에 한하며, 정규직 고용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계약을 남용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문서로 된 계약서 작성이 의무적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간주되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계약서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업무의 내용과 보수, 근무시간과 근무지를 명시해야 한다. 국제적 분류에 따른 세부 직책이 있기는 하지만, 노동법상 직원은 크게 간부직과 비간부직으로 분류된다. 보수는 해당 단체 교섭 협역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이나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19년 프랑스 피고용인의 74.6%가 정규직으로, 2018년 84.7%에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프랑스 노동법은 주당 35시간 노동과 6일 이상 노동 금지, 6시간 연속 노동마다 20분 휴식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간부직에는 법적 최대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초과 근무는 일반적으로 하루 10시간, 주당 48시간까지 연장 가능하고, 노동감찰기관의 동의 아래 특별한 경우 60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 초과 노동 수당은 노사합의에 따라 정상 수당의 최소 10% 이상으로 정할 수 있고, 이런 합의가 없을 경우, 한 주 8시간 초과 근무까지는 25%, 9시간부터는 50%로 계산한다. 초과근무수당의 일부 혹은 전체는 노사합의에 따라 보상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휴가

프랑스의 모든 피고용인은 고용계약 종류나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휴무일(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월 2.5일, 즉 연간 30일(5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휴가는 노사협약으로 한 해 중 어느 때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은 늘 포함하여야 한다. 하지만 연속적으로 24일(4주) 이상을 사용할 수는 없다. 휴가 기간은 대부분의 경우 피고용인이 정하지만, 고용인은 이 시기를 반려하거나 다르게 정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최소 한 달 전에 공지해야 하고, 한 달 안에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휴가비는 피고용자의 시간당 월 급여를 바탕으로 계산해 정상적인 월급대로 받거나 휴가 일수를 30일로 나누어 총연봉의 10%를 곱하는 두 가지 계산법이 있는데, 둘 중 피고용자에게 더 유리한 계산법을 따른다. 휴가비는 월급날에 함께 지급된다.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은 채 고용계약이 종료되거나 퇴사하게 될 경우, 고용주는 휴가비를 정산해서 한꺼번에 지급해야 한다.

해고

프랑스의 노동법상 해고에는 개인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의 해고가 있다. 개인적인 이유의 해고는 피고용자의 계약 위반, 상습적 지각, 지시 불이행 등이, 경제적인 이유의 해고는 회사의 재정적인 어려움, 구조 조정, 기술적 변화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2017년 10월부터는 대기업의 자회사에서도 그룹의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특정 분기 이상(회사 규모에 따라 최소 1분기에서 최대 4분기까지)의 주문이나 매출의 감소만으로 경제해고가 가능해졌다. 해고 대상자는 경제해고의 동기나 배경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명확한 법적 기준에 대해 법원의 임의적인 확대 해석이나 친근로자 성향이 큰 프랑스 노동법원, 고등법원의 임의해석을 불가능하게 했다.

해고를 진행하려면 우선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우편 등기로 소환장을 보내 면담 날짜를 통지하고, 그로부터 최소 5일 안에 면담을 진행하며 해고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면담 시 피고용인은 회사 외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동석할 수 있다. 면담진행 후 정해진 며칠의 숙려기간(해고 직원 수에 따라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을 지킨 후에 고용주는 다시 우편 등기로 해고 확정을 알려야 한다.

퇴직금

프랑스는 퇴직연금제도가 발달해 특정 분야의 노사협정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사무직의 경우, 별도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퇴직금은 많지 않다. 재직기간에 따라 10년~15년 재직 시 월급의 50%, 15년~20년 재직 시 1달 월급, 20년~30년 재직 시 월급의 1.5배, 30년 이상은 월급의 2배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회사의 권고에 따른 퇴직인 경우, 재직 연수에 급여의 1/4 혹은 1/3을 곱한 만큼의 퇴직금이 최소한으로 보장된다.

프랑스의 퇴직연금제도는 법으로 정해진 사회보장세 및 간부직 퇴직연금세를 매월 월급에서 납부기간(40~42년) 동안 원천공제(고용인 및 피고용인 각각 부담)해 관리금고에 불입한 후, 정년퇴직(만 62세부터) 후 동 퇴직연금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프랑스 정부의 사회보장분담금 인하 정책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피고용인의 국가건강보험 부담금이 삭제됐다. 2020년 고용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총급여의 7~13%이다.

고용보험

업종과 회사 규모에 따라 0~9%까지 다양한 비율이 적용된다.

산재보험

산재보험률은 업종 및 기업규모 등에 따라 다르다. 안전한 직종의 경우 0.2%이며, 부두 하역업종의 경우 35%로 큰 차이가 있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평균율은 2.5%에서 6% 사이이다.

국민연금

노후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된다. 기초연금은 매달 월급에서 두 가지 항목으로 원천징수된다.

1) 상한선에 따른 징수(총 15.44%): 매해 보험공단에 의해 정해지는 월급 상한선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2020년의 경우 법적 상한선이 3,428유로다. 월급이 3,428유로 이하인 경우, 월급의 15.44%를, 피고용인(6.9%)과 고용인(8.55%)이 나눠서 부담한다. 그 이상의 월급수령자의 경우에는 월급 액수와 상관없이 3,428유로의 6.9%, 8.55%를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부담한다.

2) 상한선과 관계없는 징수: 위 금액에 피고용인은 월급의 0.4%, 고용인은 1.9%를 추가 납부한다.

소득비례연금은 간부직, 비간부직에 따라 연금공단의 종류가 다르며 소득에 따라 납부 비율이 달라진다. 피고용인의 부담률은 대략 3~8% 정도이며 고용인의 부담률은 5~13% 정도다.

사회보장 종합보험

프랑스에 거주하며 합법적인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제도에 의무적으로 귀속된다. 1946년 헌법으로 제정된 프랑스의 사회보장법은 노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그 누구라도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사회공동체로부터 획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제도와 농업종사자 대상 제도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모든 피고용자와 고용자, 사회보장청이 그 의무를 함께 나누어진다. 사회보장제에는 건강보험, 퇴직연금, 가족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되고, 피고용인의 부담분은 회사가 원천징수 후 해당 기관에 납부한다. 사회복지기여금(CSG)과 기타 부담금 등을 포함하면 사회보장세로 원천징수되는 비율은 피고용인의 경우 급여의 약 22%, 고용주의 경우 약 42%이다. 정확한 비율은 소득과 간부직, 비간부직 등 고용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외국기업이 프랑스에 항시적 사업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익은 언제나 프랑스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자회사, 지점, 항구적 시설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프랑스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110개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조약을 체결해 기업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항시적 시설의 정의는 체결한 협정문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다.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은 공제되는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말하며 수익은 모든 영업활동, 판매와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프랑스 내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회사가 지출한 제반 비용 및 원가는 공제 가능하다.

- 공제 대상 비용
 -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유형 고정자산
 - 비품
 - 건물과 장비 임대료
 - 급여
 - 사회보장 부담금
 - 구입 물품
 - 에너지 소비
 - 광고비
 - 금융 비용

세액 공제 한도: 세액 공제가 남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경비에 대해 공제 한도가 설정돼 있다. 개인 차량 이용 등 필수항목이 아닌 지출이 이에 해당한다. 모회사가 프랑스의 자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공제 가능하다. 특히 경영 관련 비용, 이자 비용, 로열티는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됐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이때 적용된 가격은 시세와 일치해야 한다.

감가상각 규정: 프랑스의 감가상각 규정은 해당 고정자산의 통상 사용 연한에 따라 정액법의 감가상각률에 1.5부터 2.5까지의 가속 계수를 적용한다. 중고가 아닌 신제품 생산 설비 구입 시 이 규정이 적용된다. 소프트웨어는 감가상각 기간은 12개월이다.

프랑스 정부는 기업들의 세 부담 경감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2022년까지 법인세율을 25%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 매출 규모 763만 유로 미만의 기업일 경우, 이익규모가 38,120유로 미만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5%, 이익규모가 50만 유로 미만이면 2020년까지 28%, 2021년 26.5%, 2022년 25%가 적용되며, 이익규모가 50만 유로 이상이면 2020년 28%, 2021년 26.5%, 2022년 25%가 적용된다.

- 매출규모 763만 유로 이상의 기업은, 이익규모가 50만 유로 미만이면 2020년까지 28%, 2021년 26.5%, 2022년 25%가 적용되며, 이익규모가 50만 유로 이상이면 2020년 28%, 2021년 26.5%, 2022년 25%가 적용된다.

법적 실체가 아닌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PE)의 경우, 해외법인이 현지에 과세 가능한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해외 법인은 프랑스 내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외국회사가 회사의 고용인(직원)이 연속된 12개월 기간 동안 6개월 이상의 기간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임무를 부여받는 경우엔 고정 사업장이 형성된다. 다수 고용인이 프랑스에 머무는 경우 각각이 머무는 날짜가 모두 누계로 계산된다. 특정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해 고정 사업장 형성 조건이 조정될 수 있다.

해외 법인이 고정된 장소(사무실, 작업장, 생산설비, 판매대리점, 기타 사업설비)를 프랑스에 세울 때도 고정사업장이 형성된다. 이중과세

방지협정은 프랑스에서 고정사업장이 형성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는데, 특히 그 행위가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로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일 때이다.

개인소득세

프랑스에서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프랑스에서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한 프랑스 또는 외국 국적의 영주 거주자이며, 이 밖의 경우에는 프랑스 내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외국 국영기관에서 파견된 임시 거주자나 외교관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거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 수준에 따라 2020년 기준 연소득 10,064유로까지 0%, 25,659유로까지 11%, 73,369유로까지 30%, 157,806유로까지 41%, 그 이상 45%까지 차등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세대상소득은 가족 수로 나누어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수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일반사회기여(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세는 모든 소득에 적용된다. 일반사회기여금은 1991년 도입 시 1.1%에서 '93년 2.4%, '96년 3.4%, '98년 7.5%로 증가해왔으며 2020년에는 경제 활동 소득에 대해 9.2%, 부동산, 게임, 주식배당 및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해 9.2%, 연금에 대해 8.3%(영세 연금 3.8%), 보충 소득에 대해 6.2%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프랑스 정부는 2014년부터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인상해 얻어지는 세수 60억 유로를 기업의 경쟁력 강화·고용창출 감세(CICE)용 예산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율은 2014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조정됐고, 2020년 현재까지 같은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상세율은 기존의 19.6%에서 20%로, 할인세율은 7%에서 10%로 인상되었으며, 5.5% 및 2.1%의 최저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부가세 10% 적용대상은 운수, 호텔, 요식, 주택건설, 예술품매매, 처방전 없는 의약품, 동물원·박물관·기념관·전시회 등의 입장료, 비가공 농산물 등이다.

- 2.1% 부가세율 적용대상은 처방받은 의약품, 신문, 정육점용 살아있는 동물 등이다.
- 5.5% 부가세율 적용 대상은 식품, 학교식당 공급용 자재, 주택 열효율 제고 공사, 공공다세대아파트 임대료, 전기 및 가스요금, 도서, 연극·음악회·서커스·영화 등의 입장료,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및 장비 등이다.
- 20% 부가세 적용 대상은 알코올음료, 외설적인 인쇄물 및 폭력적인 인쇄물, 일반 공산품 및 서비스 일체이다.

프랑스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신규 주택 건설 및 열효율 제고를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보수공사에 대한 부가세를 2014년부터 5%로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별소비세

프랑스는 자국 산업보호 및 무역적자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한 내소세를 음료, 연료(특히, 화석연료) 등에 부과하고 있다. 부과 목적은 자국 민의 건강 보호 또는 환경 보전 등에 두고 있다. 프랑스의 알코올음료에 대한 내소세율은 포도주보다 맥주나 독주가 아주 높다. 포도주는 알코올 도수와 관계없이 100ℓ를 기준으로 내소세가 부과되는 데 비해, 맥주는 2.8도 이상일 경우 2배 높은 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과세 기준도 100ℓ 외에 알코올 도수까지 적용돼 알코올 함유 도수만큼 배가 된다. 게다가 알코올 함유량이 18% 이상인 알코올음료에 사회보장기여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부동산 관련 세금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크게 토지세(Taxe Fonciere)와 거주세(Taxe Habitation)가 있다. 토지세는 주택, 빌딩, 공장 등 모든 건축물 소유자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거주세는 소유자, 세입자 등 모든 거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 토지세: 주택의 면적, 입지, 상태 등에 기반해 매해 가상 임대소득(연간)을 책정한 후, 그 값의 50%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매 해 다르게 책정되는 자치단체 세율에 곱한 값이다.
- 거주세: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이후 1주택자에 한해 단계적으로 거주세를 감면해왔다. 2021년에는 소득에 따라 20%의 가구당 거주세가 축소 부과될 전망이며, 2023년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프랑스에서는 부동산 부유세가 적용되고 있다. 2017년까지 적용되던 일명 부유세(일정액 이상의 자산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재산세)가 폐지됐지만, 80만 유로 이상의 토지나 농지, 주택에 대한 부동산 부유세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단, 주거용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가치를 30%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적용 중인 부동산세율은 0.5%(80만~130만 유로), 0.7%(130~257만 유로), 1%(257만~500만 유로), 1.25%(500만~천만 유로), 1.5%(천만 유로 이상)이다.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프랑스는 1990년 금융, 보험 등 서비스 부문의 흑자 확대를 겨냥, 정부의 외환 통제를 전면 철폐하고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의한 환율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목적과 관계없이 자유로이 외환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유로이 유로화를 차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금 또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송금 수수료의 경우,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 시스템을 사용 중인 국가 간 송금인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SEPA 해당국: EU-28개국, 아이슬란드, 리히트슈타인, 노르웨이, 모나코, 스위스, 산마리노).

외환 규제

1990년 외국 외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국내 자금, 해외 자금 모두 무제한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이는 유로에 한정되지 않고 미 달러 등 외국 통화도 가능하다. 단, 1만 유로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표 등을 가지고 유럽연합으로 입국할 시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 내에서 5만 유로 이상을 유럽연합 국가로 송금하거나 송금받을 경우 돈의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외국 기업의 국내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관한 제한이 없다. 단, 금융 기관과의 각각의 거래에 따라 조건이 다르고, 모회사로부터의 보증이나 그 외 다른 형태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 대외 차입에 대해서도 규제는 없고 유로화 이외의 외화로의 차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 연합이나 유럽 연합의 정치적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통상의 유가 증권이나 금융 상품의 규제가 없고,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다.

9.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프랑스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법률로 지식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청은 발명을 보호하는 형식으로 특허와 실용증의 2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실용증은 특허와 그 보호 대상에 차이가 없으며 타 제도의 실용신안과는 무관하다. 특허와 실용증 모두 신규하고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실용증 출원에는 예비 조사 보고서 작성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실용증서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모양으로서, 특히 물품의 선, 윤곽, 색채, 모양, 질감 또는 재질의 특징에 유래하는 것은 디자인 또는 모델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최대 2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프랑스는 헤이그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자연인 또는 법인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각적 표시가 가능한 표지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보호된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는 어문·음악·연극·무용·미술·사진·영상·소프트웨어·의류 및 유행의 계절적 산업의 창작물을 보호한다.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나 게시 절차 없이 창조행위에 의하여 자동으로 보호되며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프랑스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심사의 특징은, 권리 부여 시 실질 심사를 하지 않고 침해 소송에 이르는 경우 무효판단과 함께 진보성을 판단한다는 실용주의에 근거한 독자적인 심사 체계가 있다.

프랑스는 파리 제1심 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이 특허 관련 소송에 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항소는 파리 항소 법원에서 심리한다.

지재권 침해에 관한 구제절차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민사상 침해금지, 손해배상 외에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이 가능할뿐더러 세관으로부터 침해 혐의가 인정되는 제품 및 관련 도구 등이 압류 보관되어 일정 기간 통관이 보류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프랑스의 인구는 약 6,706만 명(2020년 1월 발표 기준)이다. 평균 연령은 약 42세, 2020년 추정되는 20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23.7%로 고령화 단계에 있지만, 2019년 기준 출산율은 1.84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1인당 GDP가 47,222달러로 탄탄한 소득 기반이 있어 구매력이 높은 시장이다. <자료원 : 프랑스 통계청(INSEE)>

소비 성향

프랑스 시장은 자유시장경제가 지배하지만, 사회보장제도 및 자국산업 보호 측면에서 정부 개입이 많은 편이다. 2019년 초에는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농민을 지키기 위한 식품유통법을 통과시켰고, 2018년에는 안경테 및 렌즈를 상호 보험회사(Mutuelle)에서 100%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발표하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도 했다.

2019년 11월 프랑스 통계청이 발표한 프랑스 국민 소비형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프랑스 국민 1인당 소비규모는 유럽연합 평균보다 7%가 높았다. 프랑스 인들은 유럽 다른 지역 국민에 비해 건강, 교육, 통신, 주거 및 교통 부분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류와 신발, 알코올 음료 및 담배 등의 품목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소비율이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특히 1인당 의류 소비는 영국인, 이탈리아인의 절반 규모이며, 호텔과 레스토랑 소비도 유럽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편으로, 스페인과 독일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낮은 규모로 조사됐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소비지향적이지 않고, 소비패턴에 있어 보수적인 면이 있다. 소비자 보호단체의 활동이 활발해 상품의 가격 및 안전도, 친환경 여부 등이 자주 발표되기도 한다. 프랑스의 소비자들은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상품을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면밀히 조사, 비교하는데 익숙하다. 2008년 하반기 이후 이어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회복세에 있고, 2019년에는 구매력 수치가 특히 상승했지만, 여전히 신중하고 까다로운 구매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점점 '책임감 있는 소비'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낭비를 줄이기 위해 대량구매를 지양하고, 물건을 소유하기보다는 공유하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전기차나 수소전기차가 유망상품으로 부상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바이오 제품과 채식 관련 식품산업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소비자들은 기후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미치는 자국 또는 인근국 제품을 선호하고, 사회적 기여도가 있는 착한 기업의 제품에 관심이 많다. 프랑스 시장 진출에서 기업의 이미지와 투명성, 환경인증마크의 획득이 중요해지리라 판단된다.

유망사업으로 ICT, 전기, 전자, 건강, 의료, 합성소재, 자동화 기술 등이 있으며 대체로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호응이 좋은 편이다.

매 해 11월 중순부터 도시 곳곳에서 성탄절과 연말을 준비하는 축제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성탄절이 가까워올수록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상점과 백화점이 매우 붐빈다. 최근에는 인터넷 구매자가 많아지면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11월 말)에 영향을 받아 같은 기간에 함께 세일을 진행하는 프랑스 업체도 많아졌다. 또한 1년에 두 번, 여름(6월 말)과 겨울(1월 중순)에 대 바겐세일이 시작된다. 평균적으로 정가의 30% 이상을 할인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최대 80%까지 할인하기도 하는 최대의 쇼핑 대목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상반기 2달여간 국가비상사태와 이동금지명령이 선포되면서 소비활동이 대폭 위축됐다. 식품 및 의약품은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소비가 감소(1분기 3.8% 감소)했고, 특히 요식업 및 관광서비스업의 활동은 90% 이상이 축소됐다. 또한, 하반기에도 2차 확산으로 인한 2차 락다운 조치가 실시되어 전망이 밝지 않다. 특히 영업이 전면 금지된 식당, 카페, 술집 등과

연말 매출이 중요한 백화점, 옷가게, 서점 등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에 대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인지도는 최근 몇 년 사이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휴대폰을 비롯해 TV,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분야와 코스메틱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각 분야의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으며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고, 승용차의 경우는 SUV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과의 외교적 이슈로 국가 인지도가 매우 상승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문화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등의 K-pop 인기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비롯한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산 가공식품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K-beauty도 화장품 업계의 중요한 트렌드로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며 좋은 이미지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보수적, 소극적인 바이어 성향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거래를 꺼리는 보수적인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어 새로운 프랑스 바이어와 첫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일단 거래 관계가 형성되고 상호 신용이 쌓이게 되면 안정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따라서 첫 거래 성공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여러종류의 제품이 소량으로 거래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작은 제품이라도 꼭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동시에 시장을 선도하려는 모험정신은 부족한 편이어서 다른 시장에서 검증되기 전에는 쉽게 구매하지 않는 특성도 있다. 그러므로 바이어 설득 과정에서 타 시장에서의 성공사례를 집중 홍보하는 것이 좋다.

2) T/T 결제 선호

프랑스의 소규모 유통업체들은 은행 수수료가 높고 자금이 장기간 예치돼야 하는 L/C 거래보다는 T/T 거래를 선호하고, 거래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DA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첫 거래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안전한 L/C 거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지 바이어의 대금 결제 관행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L/C 이외의 결제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할 경우에는 바이어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3) 독점권 부여는 신중히

제품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뛰어날 경우, 바이어는 판매 독점권을 확보하려고 한다. 시장 상황과 바이어에 대한 충분한 정보, 그리고 다른 바이어의 반응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판매 독점권은 바이어 회사의 규모나 시장에서의 활약상, 그리고 바이어의 의지가 확인된 경우에 추진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특수용 기술제품일 경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소개자료(불어판) 작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점거래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가장 효과적인 시장 접근방법을 잘 판단해 계약할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된다.

4) 협약서 문화

기록문화가 일상화된 프랑스에서 비밀유지 협약서는 당연한 요청일 수 있다. 여기에 기본 상할 필요는 없다. 반면, 한국에서는 최종적으로 가격에 합의하고도 나중에 Final Price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랑스인들은 이를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 프랑스인들은 세세한 계약조건까지 계약서에 표기돼 있어야 안심한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문화적 유의사항

프랑스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국가여서 거래할 때는 이들의 문화 및 종교적 관습이나 금기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프랑스

에는 식민지 시절 유입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출신의 이슬람 종교인들을 비롯, 세네갈, 카메룬 등에서 유입된 흑인, 그 밖의 인도차이나인, 중국인, 베트남인 등이 대거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다. 백인 중에도 포르투갈, 이탈리아, 폴란드 등 이민자의 후손들이 많다. 2005년 폭동사태에서 보듯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층적 갈등은 끊임없이 사회 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심코 내뱉는 인종 및 종교 관련 발언은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 사람들은 개인의 사생활 존중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유 없이 출신 학교, 출신지, 거주지, 연령,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질문하면 불편한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동성애자인 경우도 많은데 본인이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으니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약속

프랑스인은 약속을 매우 중요시한다. 적어도 2주 전에 미팅 약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며, 메일이나 서신으로 확인을 해두는 것이 상례이다. 이메일에 응답이 없을 경우, 반드시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메일 교신을 하기 전에 전화나 서신으로 자기소개 및 용건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상담 시 명함 준비는 필수이며, 여유가 있다면 프랑스어로 제작한 명함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약속은 반드시 사전에 잡아서 정확한 시간에 지킨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늦게 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전 연락을 통해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약속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렵고 확실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 잘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 정중히 배경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다. 사전 연락도 없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위로 간주한다.

프랑스는 직업이나 직책(특히 간부직)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많아서 8시 전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대부분이 오후 5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오후 4시 이후에는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또한, 7~8월의 휴가철, 4월의 부활절, 연말·연초, 2월 겨울방학 중의 약속은 필수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랑스의 국경일도 잘 숙지해 상담 약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 대상자의 출근 여부를 미리 파악해보거나 아예 일정을 바꾸는 편이 안전하다.

3) 선물

비즈니스와 관련해 선물을 주지 않는 것이 관례이나, 부담 없는 선물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값비싼 선물은 뇌물로 오인돼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상대가 공무원일 경우 100유로 이상의 선물은 상부에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프랑스인들이 선호하는 와인이나 초콜릿이 가장 무난하고, 한국의 전통 공예품도 좋다. 간혹 한국 기업들이 회사 로고가 선명히 박힌 판촉용 아이템(펜, 명함 케이스, 예코백 등)을 준비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프랑스인들은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판촉용 선물을 제작 하더라도 회사나 단체 로고가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선물은 가급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풀어보고 만족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예의다. 또한, 협상이나 방문의 마지막 단계에 감사하는 뜻으로 선물을 주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4) 인사

프랑스인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같은 건물에 살거나 일하는 경우 복도 등에서 마주칠 때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처음 만났을 때와 헤어질 때 악수를 하는 것이 정석이다. 악수할 때에는 다른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서 안 되며, 서로 시선을 마주치며 몇 초간 성의있게 손을 잡는다. 직책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순으로 악수하는데, 간결하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포인트다. 한국처럼 두 손으로 악수하거나 악수할 때 고개를 숙여 인사하거나 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

남녀간에 인사하는 경우, 서로 잘 아는 친숙한 관계이면 양 볼을 한 번씩 교대하는 프랑스식 인사 비주(bisous)를 한다.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악수만으로 끝내는 것이 예의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악수나 볼키스 인사 문화가 사라지고, 팔꿈치를 부딪치는 방식으로 친근함을 표현하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5) 복장

프랑스인들은 생각보다 보수적이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정장 차림이 바람직하며 청결하고 깔끔한 의상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첫 만남의 경우, 남성은 어두운색의 슈트를, 여성은 정장 혹은 깔끔한 원피스를 권장한다. 하지만 공장 방문 일정이 있거나 공장 관련 실무자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정장차림보다 노타이 등의 세미 정장이 더 어울린다. 드레스 코드가 캐주얼이라고 해도 티셔츠나 반바지 수준의 가벼운 차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킷과 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HJC 홍진크라운

홍진크라운은 2001년 독일 접경 프랑스 동부 지방도시에서 시작해 모토 사이클 헬멧, 재킷 및 장갑 시장에서 2017년 약 3,800만 유로의 매출을 올린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종업원 20명의 대부분이 물류창고에서 근무하고 있고,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판매를 전담하는 직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매니저가 붙어 및 현지 사정에 능통한 한국인이라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다. 이는 현지 직원들과의 문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해낼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해주는 간부직원의 역할이 성공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물류센터 종업원들과의 인간관계 유지 능력이 출중해 적기 공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거래처의 신뢰도 증가 및 매출 증대에 공헌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직원에게 기본급+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판매 신장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 프랑스에서 가장 근면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독일 접경 도시에 투자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공 요인 중의 하나이다. 수시로 독일 땅이 됐다가 프랑스로 환원되곤 하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근면한 독일계 피가 많이 섞인 알자스 지방은 실업률도 높아 성실하고 우수한 유효 인력을 고용하기에 비교적 수월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 강화도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시장인 독일과 도보로 넘나들 수 있는 접경 도시에 자리를 잡은 것도 원활한 유통 및 물류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 네이버

네이버는 2017년 프랑스의 제록스리서치센터 유럽을 인수한 후 코렐리아 캐피탈이 운영하는 유럽 투자펀드 'K-펀드 1'에 총 2억 유로를 출자, 네이버 랩스 유럽을 만들며 프랑스에 유럽 시장 공략 거점을 마련했다. 또한 2017년 6월 프랑스에 자회사인 '네이버 프랑스'를 설립해 파리에 위치한 세계 최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스테이션 에프(Station F)' 내 스페이스 그린(Space Green)'을 운영 중이다. 2018년 8월에는 네이버 프랑스에 2,600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등 프랑스 투자에 주력해 유럽 시장 공략 기반을 확립했다. 네이버 랩스 유럽은 2019년 11월 전세계 AI 및 로봇분야 석학 11명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며 글로벌 AI 연구 벨트 구축을 선언했다.

프랑스 진출의 성공요인으로서는 무엇보다 프랑스 현 정부가 R&D 및 스타트업 육성(세제적 및 금전적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코렐리아캐피탈이 프랑스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잘 알고 있는 전 프랑스 디지털 장관이 설립한 벤처투자사라는 점과 동사가 운영하는 'K-펀드 1*'이 유럽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력한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Seed보다는 Series A, B 또는 C에 해당하는 기성 스타트업체(10여개)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투자 시 손익분계선이 비교적 짧은 것이라는 점을 모두 감안하고 심분 활용한 부분도 성공 요인으로 판단된다.

* K-펀드 1은 하이엔드 음향기기 제조기업 '드비알레(Devialet)', 인공지능(AI) 기반 음성 인식 플랫폼 '스냅스', 리쿠르팅 플랫폼 '잡티저', UX 데이터 분석 솔루션 에이비테이스티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 서비스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3) SPC 그룹

SPC 그룹은 2018년 프랑스의 빌뇌브-다스크(Villeneuve-d'Ascq)에 본사를 두고 파리에 PB 간판을 건 두 개의 매장을 개점했다.

노르망디 지역에 제빵공장을 건립하며, 노르망디 지역의 특산품인 이지니 버터(AOC Isiny)와 유제품을 사용하고, 노르망디 지역의 르아브르 국제항구의 물류센터로 이용하는 등 지역의 특수성을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프랑스는 제과제빵 분야의 강국으로 자국 기술에 자존심이 높은 국가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되려 이 부분을 고려해 프랑스 제과점 고유의 인테리어를 유지하고, 버터와 유제품 등 주요 재료를 현지에서 공급하는 식으로 시장의 특수성에 맞춘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성공적이라 판단된다.

4) SK 종합화학, 프랑스 아르케마(Arkema)사의 폴리머 사업부문 인수 합병

아르케마 사는 프랑스 최대 석유회사인 Total의 자회사로, 특수 화합물 및 고기능성 소재, 코팅 솔루션 사업 등의 화학제품 생산 업체다.

SK 종합화학은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프랑스 내 생산시설 세 곳과 제품에 대한 영업권, 기술, 인력을 획득하게 됐다.

SK 종합화학의 유럽 내 인수합병 첫 사례로, 기존에 수입에 의존했던 폴리머 소재의 자체생산 환경을 구축한 점,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해 패키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인수합병의 성과가 더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비자 종류

3개월(90일) 이내의 단순 관광 목적 입국 시에는 비자가 불필요하지만, 프랑스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으로 부터 비자를 받아야 한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웹사이트 주소: <https://kr.ambafrance.org>)

비자 발급에는 2~3주가 소요되며 피크시즌(6~9월, 11~1월)에는 1달까지 소요될 수 있다. 프랑스 입국 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유효 여권, 비자 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등이 필요하다. 그 밖의 서류는 사전에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자 취득과 관련된 기타 안내는 주한 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고, 비자 신청을 위한 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안내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화, 팩스, 이메일, 비자접수창구로는 예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자발급업무(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 정지 중)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주한 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등 쥬겐조약에 가입한 유럽연합 26개 국가 방문 시 한국인은 쥬겐 단기 비자가 필요 없다. 입국한 날부터 90일 동안에는 이들 25개국에 자유로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쥬겐 협정 지역 국가는 그리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이상 26개국이다.

장기 체류 비자의 종류는 그 목적에 따라 학생, 노동, 연구자 및 초청교수, 프랑스 국적자의 배우자, 자영업, 예술인, 방문자, 또는 재능 비자 등으로 분류된다. 장기 비자 취득 후 프랑스에 도착하면 2개월 이내에 체류증을 거주지 관할 경시청(Prefecture de Police)에 신청해야 한다. 그 외에도 프랑스는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와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민이 상대국에서 관광 및 문화목적으로 1년 이하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한국-프랑스의 경우 2009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비자의 특징은 현지에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조건은 자녀를 동반할 수 없으며 왕복 티켓을 가지고 있거나 귀국 항공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 한다. 구비서류로는 자기소개서, 이력서, 건강진단서, 무범죄 증명서가 있으며, 개인 보험(의료, 출산, 불구, 입원, 본국송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비자는 매년 2,000건 발급 가능하며, 비자 신청 및 발급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2) 발급절차

- ① 주한 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 통해서 비자 신청 예약을 한다.
- ②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늦지 않게 출석한다.
- ③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과 생체 정보 등록(지문 등록 및 사진 촬영) 절차를 진행한다(단, 만 12세 미만의 비자 신청자는 생체 정보 등록 절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체 정보 등록 절차는 아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 1단계: 지문 등록
 - 오른손 네 손가락의 지문 등록
 - 왼손 네 손가락의 지문 등록
 - 엄지 두 손가락의 지문 등록

- 2단계: 사진 촬영

- 비자 창구에서 직접 사진 촬영을 한다. 안경, 모자, 머플러, 귀걸이, 머리띠 등을 모두 다 벗어야 한다.

3) 비자 신청 조건

여권은 최근 10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프랑스 입국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15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미성년자도 각자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늦지 않게 출석해야 한다. 만 12세 미만의 비자 신청자는 지문 등록과 사진 촬영 절차가 면제되므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단,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요구된 동일한 조건의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한다.

의료보험은 입국일 예정일부터 마지막 체류일까지 유효해야 한다. 질병 치료 실비, 상해 치료 실비, 특별비용(본국 송환 비용)은 각각 최소 30,000유로 이상 보장해야 하며, 개인 배상 책임은 10,000유로 이상 보장돼야 한다(의료보험 서류 제출은 비자 신청 필요 서류에서 요구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쉥겐 지역(유럽 연합 회원국 중 26개 국가) 입국 및 출국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 예약확인서도 가능하다. 비자 신청 접수료는 원화,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환율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환불 불가). 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완벽하게 제출해야 한다. 비자 신청서는 작성 및 서명까지 해야 한다. 신청인의 안전에 방해될 수 있는 소지들을 피하기 위해 비자 신청인들만 입장할 수가 있다. 단, 부모를 동반한 미성년자거나 법정 보호인들은 예외이다.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서류를 제출한다.

- ① 장기비자 신청서(작성 및 서명, 증명사진 1장)
- ② 여권 사본(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③ 비자 신청자가 한국 거주 외국 국적자일 경우: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 ALIEN CARD 사본
- ④ 또는 비자 신청자가 한국 거주 외국 국적자일 경우 재입국 허가 사본
- ⑤ 재정 보증 증명서
- ⑥ 체류 목적 증명서
- ⑦ 항공권(전자 항공권 혹은 예약 확인서)
- ⑧ 거주증명서
- ⑨ 의료보험 증명서
- ⑩ OFII(프랑스 이민국) 신청서

4) 비자 신청 필요 서류 중 붙여 번역 공증이 필요한 서류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에서 프랑스어-한국어 혹은 한국어-프랑스어 문서에 관한 번역 공증 업무 관련 문의는 받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프랑스 경시청에서 교부받은 운전 면허증
- 프랑스 교육 기관에서 교부받은 학위증
- 혼인 및 이혼에 관한 한국 호적 서류

이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추천하는 번역사들에게 번역을 의뢰해야 한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 여행 중 사용할 물품
 - 수량, 용도가 상업적 성격을 띠지 않아야 함
 - 보석,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휴대폰 등 고가 물품의 경우 프랑스 세관당국이 물품구매 영수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상품의 경우, 총액 430유로 이하(항공해상 여행객이 아닌 기타 여행객은 300유로 이하)
 - 15세 미만의 경우 150유로 이하
- 직업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 전시회 상품견본, 성능시험용 제품 등 일시적 반입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 물품 확인서(Admission temporaire de marchandise)'를 입국 시 세관당국에서 받아야 면세 통관이 가능

2) 외국환신고

총액 기준 10,000유로 상당액 이상의 현금 및 수표,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보유 시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33-1-4753-0101
주소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홈페이지	http://fra.mofa.go.kr

◦ 프랑스 한인회

전화번호	33-1-4842-1632
주소	83, rue de la Croix Nivert 75015 Paris
홈페이지	https://koreanfr.org/

◦ 한국 무역보험공사

전화번호	33-9-88-01-77-66
주소	45 rue Pierre Charron 75008 Paris
홈페이지	http://ksure.or.kr

◦ OECD 한국대표부

전화번호	33-1-4405-2050
주소	4, place de la porte de Passy 75016 Paris
홈페이지	http://oecd.mofa.go.kr

◦ 한국수출입은행

전화번호	33-1-4421-8317
주소	36, avenue Hoche 75008 Paris

◦ 한국관광공사

전화번호	33-1-4538-7123
주소	20 rue la boetie 75008

홈페이지	http://visitkorea.or.kr
------	---

○ 한국수력원자력(주)

전화번호	33-1-4409-7490
주소	19 rue de l'Amiral d'Estaing 75116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화번호	33-1-4108-6076
주소	89 rue du Gouverneur general eboue 1er etage 92130 Issy-les-Moulineaux
홈페이지	http://at.or.kr

○ 한국철도공사 KORAIL

전화번호	33-1-4562-0142
주소	14, rue Mademoiselle 75015

○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럽사무소

전화번호	33-1-4268-0037
주소	20 rue la boetie 75008

〈자료원 : Allo Paris(교민디렉토리)〉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Ministere de l'Economie et des Finances

전화번호	33-1-4004-0404
주소	139, rue de Bercy
홈페이지	http://www.economie.gouv.fr
비고	경제재무산업부

○ CCI Paris Ile-de-France

전화번호	33-8-2001-2112
주소	27 avenue de Friedland
홈페이지	https://www.cci-paris-idf.fr/
비고	프랑스 상공회의소

○ Business France

전화번호	33-1-4073-3000
주소	77 Boulevard Saint-Jacques 75014 PARIS
홈페이지	http://www.businessfrance.fr
비고	프랑스 무역투자진흥기관

○ Le Monde(르몽드)

전화번호	33-1-5728-2000
주소	80, boulevard Auguste-Blanqui 75707 Paris cedex 13
홈페이지	http://www.lemonde.fr
비고	현지 언론사

○ Le Figaro(르피가로)

전화번호	33-1-7037-3170
주소	14, boulevard Haussmann, 75009 PARIS
홈페이지	http://www.lefigaro.fr
비고	현지 언론사

〈자료원 : 정부 및 기관 웹사이트〉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0.84유로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5.3
2	식품	비빔밥	1인분	17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7
4	식품	신라면	1봉지	1.3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3.8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0.6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1.7
8	의료	항생제	12정	22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2.3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2.3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8
12	서비스	헤어컷(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35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8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17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4.5
16	여가	담배(말보로라이트)	1갑	11.4
17	여가	소주(한식당 내 판매 최저가)	350ml	14.8
18	임금	최저임금	한 달 급여	1825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35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0

<자료원 : 프랑스통계청(INSEE), 프랑스중앙은행>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프랑스는 2002년 1월 1일부터 이전 화폐였던 프랑(franc)화의 유통을 중단하고 공동화폐인 유로(Euro)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유로의 하부 단위는 센트(cent)이며, 프랑스 현지에서는 썬팀(centime)으로 부른다. 주화에는 1, 2, 5, 10, 20, 50센트와 1, 2유로가 있다. 지폐로는 500(최고액권), 200, 100, 50, 20, 10, 5유로권이 있다.

지폐의 디자인은 사용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나 동전의 뒷면 디자인은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 차별화했다. 참고로, 유럽에서 위조지폐 제조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프랑스는 유로화 통용 후에도 위조지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장 많이 위조되는 지폐는 200유로권인데, 최근에는 50유로권을 지불할 때에도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

환전방법

프랑스 시중은행의 일반 지점은 외환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리 환전하거나 공항에 있는 환전소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 시중은행 본점과 시내 및 관광지에 위치한 환전소(Bureau de change)에서 주요 통화(달러화, 엔화 등)를 환전할 수 있으나 점포별로 적용 환율은 다르다.

신용카드 이용

신용카드보다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현금카드(Debit Card) 결제 서비스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결제 시 점원에게 카드를 건네는 한국의 결제 방식과는 달리 대부분 손님이 카드 결제 기계에 직접 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코드)를 입력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50유로 이하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을 하지 않고 기계에 접촉만 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썸 공택(Sans contact)' 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비교적 현금카드가 잘 통용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카드 결제가 안전하며, 현금인출기도 많이 보급되어 있으므로 현금이 필요할 경우 이를 활용하는 편이 낫다. 특히 주요 관광지에 소매치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현금을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 교통

교통상황

프랑스 시내 대부분의 도로는 좁고 일방통행이 많으며, 따라서 교통 체증도 잦다. 또한 도로에 차선이 없는 경우가 많아 양보와 자유가 공존하는 도로를 볼 수 있다. 보행자는 비교적 신호 준수에 자유로우며 무단횡단이 잦지만 운전자의 신호 준수는 매우 엄격하게 요구된다. 주차 시에는 대부분 도로 한 켠에 정차한 뒤 셀프 선불 주차 기계를 이용해 주차한다. 혹은 시내 곳곳에 위치한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 주차한다.

버스

대부분의 프랑스 내 도시는 버스가 발달해 있으며, 버스 탑승 후 기사로부터 직접 구입 혹은 각 도시/지방에서 사용하는 충전식 버스 티켓으로 탑승 가능하다. 파리의 경우 지하철역 내에서 표를 구입할 수 있으며 일드프랑스(Ile-de-France) 교통패스인 '나비고(Navigo)'로도 탑승 가능하다. 버스와 버스, 혹은 버스와 트램(지상-지상) 간 환승이 가능하며 버스와 지하철(지상-지하) 환승은 불가능하다. 버스 경로, 출발 및 도착 시간은 파리교통공단(RATP)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 구글맵(Google Maps) 또는 시티맵퍼(Citymapper)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택시

프랑스의 택시는 요일과 이용 시간대에 따라 자동차 상단 TAXI 글씨 밑 A/B/C 세 가지 등급에 각기 다른 불빛이 표시되며, 등급별로 km당 책정 요금이 다르다. 등급별 상세 요금은 <https://www.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vosdroits/F22127> 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인 이상 탑승 시 2.95의 추가 요금, 수하물의 무게에 따라 2유로의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파리 현지에서는 최근 들어 택시 승강장 혹은 길가에서 예약 없이 택시를 타는 경우보다 Uber 혹은 Chauffeur privee와 같은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VTC)를 주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공항-파리 시내 간 택시요금은 공항별, 시내 구역별로 요금이 정해져 있다.

- 샤를드골 공항(CDG) - 파리 우안(Rive Droite, 파리 시내 세느강을 기준으로 위쪽): 53유로
- 샤를드골 공항(CDG) - 파리 좌안(Rive Gauche, 파리 시내 세느강을 기준으로 아래쪽): 58유로
- 오를리 공항(Orly) - 파리 우안(Rive Droite, 파리 시내 세느강을 기준으로 위쪽): 37유로
- 오를리 공항(Orly) - 파리 좌안(Rive Gauche, 파리 시내 세느강을 기준으로 아래쪽): 32유로

기타 교통수단

파리는 14개 호선의 지하철(Meacutetro), 교외 철도 RER, Transilien으로 시내와 교외가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Meacutetro는 1회 탑승 시 1.9유로, RER과 Transilien은 출발지와 도착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표의 가격이 다르다. 장기 체류 혹은 지하철 이용이 잦을 경우, 일드프랑스(Ile-de-France) 지역 교통패스인 나비고(Navigo)를 구입하여 일주일 혹은 한 달 단위로 충전해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편리하다.

* 주요 용어: 출구(Sortie), 환승구(Correspondance)

다. 통신

핸드폰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쓰려면 로밍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로밍 서비스에는 자동로밍과 임대로밍이 있는데, 임대폰은 매일 임대료가 부과되지만 자동로밍은 통화료에 부가요금이 없다. 또 자동로밍에는 국내에서 걸려오는 전화의 발신번호가 표시되므로 중요한 전화만 받을 수 있고 문자 메시지 통신도 가능하다.

EU는 지난 2017년 6월 EU 역내에서 부과해온 휴대전화 로밍 요금을 폐지했다. 2019년 5월 15일부터 유럽연합(EU)에 속한 한 국가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국제전화를 할 경우 전화요금이 1분당 19센트 유로(260원, 1유로=1,372원 적용), 문자메시지의 경우 6센트 유로(82원)로 상한선이 적용돼 통신요금이 낮아졌다.

인터넷(와이파이)

일반 카페, 레스토랑에 고객이 사용 가능한 와이파이가 깔린 경우가 많다. 종업원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문의해서 사용한다. 인터넷 전용 카페를 찾기도 비교적 쉬운 편으로, 이용료 지불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사용 전에 미리 일정 시간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와 후에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카페 컴퓨터에서는 영어나 프랑스어만 사용할 수 있다. 고급 비즈니스호텔에 머물고 있다면 비즈니스 센터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야외에서 와이파이를 찾기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아주 어려운 편이며, 속도 또한 현저히 느린 편이다.

라. 관광명소

○ 베르사유 궁전(Versailles palace)

도시명	Versailles
주소	Place d'Armes, 78000 Versailles
운영시간	화~일: 09:00~18:30(4~10월), 09:00~17:30(11~3월)
휴무일	매주 월요일
명소소개	프랑스 절대 왕권의 상징인 루이 14세의 지휘 하에 지어진 궁전으로, 절대 왕정 시기의 화려함과 부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궁전 내 수 많은 연회와 궁중 의식들이 진행되었던 '거울의 방'과 넓은 정원에 위치한 두 별궁 '그랑 트리아농(Grand Trianon)'과 '쁘띠 트리아농(Petit Trianon)'이 유명하다.
비고	전화: 33 1 30 83 78 00 홈페이지: www.chateauversailles.fr

○ 에펠탑(Eiffel Tower)

도시명	파리
주소	Champ de Mars, 5 Avenue Anatole France, 75007 Paris
운영시간	월~일: 09:30~23:45 마지막 입장 입장 시간: 22:30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1889년 만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알렉상드르 귀스타브 에펠(Alexandre Gustave Eiffel)의 설계로 세워진 철탑. 건축 당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는 파리를 넘어 프랑스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다.
비고	전화: 33 8 92 70 12 39 홈페이지: http://www.toureiffel.paris/fr

○ 루브르 박물관(Louvre Museum)

도시명	파리
주소	Rue de Rivoli, 75001 Paris
운영시간	화요일 제외 매일 09:00~18:00
휴무일	매주 화요일, 1월 1일(신정), 5월 1일(노동절), 12월 25일(성탄절)
명소소개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인 리볼리가에 있는 국립 박물관이다. 소장품의 수와 질 면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대영박물관과 함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박물관이다. 지금의 건물은 루브르 궁전을 개조한 것으로, 파리의 세느 강변에 포함하여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매년 천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예술작품(약 35,000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컬렉션은 회화와 조각뿐만 아니라 이집트, 그리스, 중앙아시아, 이슬람 문화권의 예술 작품까지 매우 다양하다.
비고	전화: 33 1 40 20 50 50 홈페이지: www.louvre.fr

○ 오르세 미술관(Orsay Museum)

도시명	파리
주소	1 Rue de la Légion d'Honneur, 75007 Paris
운영시간	화~일: 09:00~18:00 목요일: 09:00~21:45
휴무일	매주 월요일, 5월 1일(노동절), 12월 25일(성탄절)
명소소개	파리 센강 서안에 위치한 국립미술관으로서 루브르 박물관(Le musée du Louvre)과 킬리리 정원(Jardin des Tuileries)을 마주하고 있다. 1900년 만국박람회 당시 건축가 빅토르 랄루(Victor Laloux)의 설계로 건축된 기차역을 개조하여 내부에 건립되었으며, 1848년부터 1914년까지의 서양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비고	전화: 33 1 40 49 48 14 홈페이지: www.musee-orsay.fr

○ 에투알 개선문(Triumphal arch in Paris)

도시명	파리
주소	Place Charles de Gaulle - 75008 Paris
운영시간	현재 매일 11:00~19:00
휴무일	5월 8일(2차세계대전 승전기념일), 7월14일(프랑스대혁명 기념일), 11월11일(1차세계대전 종전기념일) 오전
명소소개	에투알 개선문은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해 기공되어 그의 사후 준공된 매우 거대한 개선문이다. 프랑스 역사 영광의 상징으로 높이는 50m이다. 나폴레옹 군대의 전승기념으로 착공 시작, 30년 만인 1836년에 완공되었다. 나폴레옹 및 위고의 장례행렬이 지나갔으며, 제1차 세계대전 승전행진, 나치의 파리 점령행진 등이 열린 역사적 무대이다. 벽면에는 나폴레옹의 승전 부조와 함께 전쟁에서 공을 세운 600여 명의 장군 이름이 새겨져 있고, 개선문의 바로 아래에 무명용사의 무덤이 있고 사계절 등불이 꺼지는 일이 없고 현화가 시드는 일이 없다. 2004년 5월 한국전쟁기념동판이 개선문 바닥에 설치되었다.
비고	전화: 33 1 55 37 73 77 홈페이지: www.paris-arc-de-triomphe.fr

<자료원 : 관광명소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 제불롱(Zébulon)

도시명	파리
전화번호	33 1 4236 4944
주소	10 Rue de Richelieu, 75001 Paris

가격	30유로(34달러)
영업시간	월~토: 12:00~14:00 및 19:30~22:00
휴무일	매주 일요일
소개	캐주얼 프렌치 식당 매일 바뀌는 오늘의 메뉴(Plat du Jour)가 유명
비고	가격대는 1인 본식 기준

◦ 마쎬오(Macéo)

도시명	파리
전화번호	33 1 8515 2256
주소	15 Rue des Petits Champs, 75001 Paris
가격	26유로(30달러)
영업시간	월~금: 12:00~14:00, 19:00~22:30 토: 19:00~22:30
휴무일	매주 일요일
소개	세련된 분위기의 프렌치 식당 손님 접대에 좋음
비고	가격대는 1인 본식 기준

◦ 오 뽀띠 히슈(Au Petit Riche)

도시명	파리
전화번호	33 1 4770 6868
주소	25 Rue le Peletier, 75009 Paris
가격	25유로(29달러)
영업시간	월~토: 12:00~14:30, 19:00~24:00 일: 12:00~14:30, 19:00~22:30
휴무일	없음
소개	1854년부터 영업한 전통 있고 클래식한 프렌치 식당
비고	가격대는 1인 본식 기준

◦ 빅 페르낭(BIG Fernand)

도시명	파리
전화번호	33 1 8163 0863

주소	40 place du marché Saint-Honoré, 75001 paris
가격	16유로(18달러)
영업시간	월~일: 12:00~22:30
휴무일	없음
소개	수제버거 체인점, 프랑스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음

◦ 피자리아 포폴라르(Pizzeria Popolare)

도시명	파리
전화번호	33 1 4221 3091
주소	111 Rue Réaumur, 75002 Paris
가격	15유로(17달러)
영업시간	월~목: 11:45~14:15, 18:30~22:30 금: 11:45~14:15, 18:30~22:45 토: 12:00~15:15, 18:30~22:45 일: 12:00~15:15, 18:30~22:30
휴무일	없음
소개	모든 종업원이 이탈리아인으로, 저렴한 가격대에 이탈리아 음식을 즐길 수 있음. 대형 이탈리아 레스토랑 체인 빅마마(Big Mama)그룹의 레스토랑 중 하나

<자료원 : tripadvisor>

- 한국식당

◦ 우정(WOOJUNG)

도시명	파리
전화번호	33 1 4520 7282
주소	8 Boulevard Delessert, 75016 Paris
가격	23유로(26달러)
영업시간	월~토: 12:00~14:20, 19:00~22:20
휴무일	일요일
소개	주요 메뉴는 모듬전, 불고기 등임. 차분하고 전통적인 분위기의 식당으로 손님 접대 시 좋음.
비고	2대째 이어져 오는 유서 깊은 한식당 중의 하나임.

◦ 송산(SONGSAN)

도시명	파리
-----	----

전화번호	33 1 4532 4070
주소	20 Rue Marmontel, 75015 Paris
가격	16유로(18달러)
영업시간	화~일: 12:00~14:30, 19:00~23:00
휴무일	월요일
소개	주요 메뉴는 쟁반짜장, 탕수육, 소곱창구이 등임. 파리 내 한식당 중에서도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

◦ 한잔(HANZAN)

도시명	파리
전화번호	33 1 4571 6353
주소	11 Rue Beaugrenelle, 75015 Paris
가격	17유로(19.50달러)
영업시간	화~일 : 12:00~14:30, 19:00~22:30
휴무일	월요일
소개	주요 메뉴는 족발, 간장새우, 감자탕 등임. 보그르넬(Beaugrenelle) 쇼핑몰과 에펠탑과 인접 해있어 접근성이 좋고 깔끔한 분위기임

◦ 국일관(KOOKILKWAN)

도시명	파리
전화번호	33 1 4261 0418
주소	12 Rue Gomboust, 75001 Paris
가격	16유로(18달러)
영업시간	월~토: 12:00~14:30, 19:00~22:30
휴무일	일요일
소개	주요 메뉴는 육개장, 소머리국밥 등 탕 종류임. 루브르 박물관, 오페라 가르니에가 위치한 파리 최중심에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함.

◦ 백세주마을(Bekseju Village Oaris)

도시명	파리
전화번호	33 1 7711 2437
주소	53 Boulevard Saint-Marcel, 75013 Paris
가격	20유로(22.80달러)

영업시간	일~목: 12:00~14:00, 19:00~22:30 금, 토: 12:00~14:00, 19:00~23:00
휴무일	없음
소개	주요 메뉴는 매운 족발 및 여러 종류의 막걸리임
비고	우리나라 대표 전통주 전문 기업 국순당이 파리에 개시한 한식당

〈자료원 : tripadvisor〉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에펠 생 샤를(Eiffel Saint Charles)

도시명	파리
주소	37 rue Saint Charles, 75015 Paris, France
전화번호	33 1 4579 6415
홈페이지	http://www.hotel-eiffel-saint-charles.com
숙박료	90~100달러(스탠다드 룸)
소개	비즈니스맨들에게 적합한 호텔로, 내부시설도 제법 깨끗하고 조용하고 안전한 주거지구에 위치해 있음

○ 베른 오페라 호텔(Hotel Berne Opera)

도시명	파리
주소	37 rue de Berne, 75008 Paris, France
전화번호	33 1 4387 0892
홈페이지	http://www.paris-hotel-berne-opera.com
숙박료	90~100달러(스탠다드 룸)
소개	여러 호선이 교차하는 지하철 역과 생라자르(Saint-Lazare) 기차역이 가깝게 위치하여 교통이 매우 편리함

○ 호텔 오키데(Hotel Orchidée)

도시명	파리
주소	65 rue de l'Ouest 75014 Paris
전화번호	33 1 4322 7050
홈페이지	http://www.hotelorchidee.com

숙박료	90~100달러(스탠다드 룸)
소개	여유로운 크기와 청결하며, 파리 내 큰 기차역 중 하나인 몽파르나스(Montparnasse) 기차역이 가깝게 위치해 있음

<자료원 : 호텔스닷컴(Hostels.com), 부킹닷컴(Booking.com)>

- 게스트하우스

o 메종 드 헤브(Maison de Rêve)

도시명	파리
주소	41 Avenue Rapp, 75007 Paris
전화번호	33 7 6787 8878
숙박료	50달러(4인 도미토리)
소개	파리 내에서도 안전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7구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관광지 도보로 이동 가능
비고	한인민박

o 뽀띠 마레(Petit Marais)

도시명	파리
주소	15 Rue du Faubourg du Temple, 75010 Paris
전화번호	33 6 6847 7546
홈페이지	https://petitmarais.modoo.at
숙박료	35달러(4인 도미토리)
소개	5개 호선이 교차하는 지하철역과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기차역 Gare de l'Est와 Gare du Nord역이 인접해 있음
비고	한인민박

<자료원 : 익스피디아>

사. 치안

치안상황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프랑스 정부는 EU 대외 국경을 폐쇄한 상태다. 프랑스에 입국하는 이들은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전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불가피한 방문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등을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는 경우 공항에서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국의 경우, 프랑스 외무부가 선정한 안전국가에 포함되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서 제출이 불필요하다.

최근 프랑스 내 계속되는 테러위협과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아시아계를 비롯한 특정 그룹을 향한 혐오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구체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메시지가 SNS 등을 이용해 퍼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프랑스 거주 시 신변안전에 각별

한 유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연락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 주 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33-1-4753-0101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33-6-8095-9347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코로나19 확산이전, 프랑스는 여행경보 1단계의 '여행 시 신변안전 유의의 국가'로 분류됐다. 소매치기 및 인종차별 관련해서 주의해야 하며 2015년 11월 130여 명의 시민이 희생된 비극적인 테러 역시 발생한 바 있어 테러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수도 파리는 20개의 구(Arrondissement)로 이루어져 있는데, 북쪽의 18,19구는 위험한 구로 손꼽히며 숙박과 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중밀집시설(대형 쇼핑몰, 주요 관광지 등) 방문 시 유의해야 한다.

프랑스 전체에서는 파리와 파리 교외를 아우르는 일드프랑스(Ile-de-France) 지역과 남동쪽의 Bouches-Du-Rhone, Var 지역이 높은 범죄율을 보이므로 대중밀집시설(대형 쇼핑몰, 주요 관광지 등) 방문 시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야간외출(술집 등의 심야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권고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사고 책임이 상대방에 있을 경우 상대 차량의 차량번호판과 조수석 전방에 있는 보험사정보카드(Carte verte) 촬영(도주 방지 목적. 촬영 전 도주할 시 차량 번호 및 사건 발생 위치, 시각 등을 기억한 후 경찰 및 보험사 신고)한다. 이후 상대 차량 운전자와 사고확인서(Constat amiable)를 빠짐없이 작성 후 각각 1부씩 가진 후 5일 이내에 본인의 보험사에 제출한다. 상대방과 사고확인서 작성 불가 시 각자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한다.

- 사고확인서가 없을 시 상대차량 번호판과 보험확인증을 사진촬영 후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추후에 만나 작성

견인(Remorquage)이 필요할 경우 보험사(assistance)에 견인차량을 요청하고, 견인 시 사고장소 인근에 보험사와 계약된 정비소(Garage)로 견인, 보험사 전문가의 차량 피해 확인, 정비소 업체 수리의 과정을 거쳐 차량 인계가 가능하다. 견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사와 계약된 사고발생 인근 정비소를 안내받은 후 해당 정비소로 차량을 인계한다.

여행 중 렌트차량 사고 시 일반 차량과 사고처리과정이 동일하나 렌터카 업체에도 연락하여 도움받을 필요가 있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평일 업무시간(9:30~16:30) 중 대사관 직접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업무시간 외,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여권담당자(+33 (0)6 22 78 26 56)와 직접 통화하여 약속을 잡은 후 대사관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준비물
 - 여권재발급신청서(영사과에 구비)
 - 여권분실신고서(영사과에 구비)
 -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도난) 신고서(생략 가능)
 - 여권용 사진 2매(3.5*4.5cm): 파리 시내 지하철역 내 사진촬영 기기 Photomaton에서 촬영 가능(대사관 인근 8, 13호선

Invalides역)

- 수수료(현금, 수표 가능)
- 단수여권: 47.70유로(53달러)

· 여행증명서: 6.30유로

※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모두 전자여권과 다르게 입출국 및 경유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제한되어 있으며 동 국가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신고: 18
- 범죄 신고: 17
- 의료: 앰불런스 서비스 15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은행계좌 개설, 전화 및 인터넷 설치, 휴대폰 개통 등을 위해서는 주택을 구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나 프랑스의 주택사정은 그리 양호한 편이 아니다. 특히, 파리의 경우 25~30평 정도의 아파트를 임차하는데 월 2,000~4,000유로가 필요하다. 시내 곳곳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물을 알아볼 수 있으며, 시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임차료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현대식 아파트 건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옛 건물을 굳이 기피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주택 확보 방법

부동산을 직접 접촉하기 전에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를 통해 매물을 검색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대표 사이트로는 www.seloger.com이 있다.

주택 임차 과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주택 정보에 대한 국가기관인 ADIL(<http://www.anil.org/>)에 문의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집주인이 매매 또는 임대 주택 광고를 내는 주간지(De particulier a particulier)를 구입하거나 사이트(<https://www.pap.fr/>)에서 직거래를 모색할 수도 있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거하고자 하는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 또는 임대 주택을 물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특히,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파리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프랑스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한인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물색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주거 관련 중개 사이트에서 직접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찾아 집을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임대인과의 직거래도 가능하지만 대체로 일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올린 광고가 대부분이며, 도시별 주택 임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집을 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분의 월세(관리비와 부가세 미포함)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연간 임대료의 12~20%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집에 하자가 있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 시 직거래 때보다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증금은 현금 또는 수표로 주인(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다. 계약이 종료되면 이 보증금은 인벤토리 후 수리비나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환불받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회사원인 경우에는 회사가 보증해줄 수도 있으나, 일반 프랑스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족이 보증을 선다. 비거주자는 보증인 자격이 없다.

○ 주택 임대료

프랑스에서는 임대료가 순수임대료(Loyer)와 관리비(Charges)를 포함한 임대료(Loyer charge compris)로 구분된다. 관리비에는 일반적으로 청소비, 수도비, 중앙난방비(해당되는 경우), 기타 관리비 등이 포함돼 있으며, 순수임대료의 약 20~30%가 된다.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집주인마다 달라서 임대계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관리비는 전년에 점검한 수도, 난방사용량, 토지세, 오물세 등을 평균을 내 올해의 순수 집세에 예상 사용비를 미리 지불하는 방식을 쓰며, 연말 실질 사용 금액을 계산해 정산한다. 덜 쓴 경우에는 차액을 다음 해로 이월해주며(해약 시에는 집주인에게 돌려줌) 더 쓴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추가 부담을 시킨다.

전화

주택 임차가 끝나면 전화와 인터넷을 개통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통신업체가 전화, 인터넷, 케이블 TV를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France Telecom, SFR, Bouygues Telecom, Free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업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종류와 요금 등 계약조건을 비교한 후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인터넷 개통 소요시간은 업체별로 다르나, 파리의 경우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예상해야 한다.

휴대폰은 통상 은행계좌와 계좌증명서(Releve de compte), 거주증명서(주택계약서, 전기료 납부 영수증 등)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 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인터넷 혹은 통신사별 대리점을 방문해 원하는 기종과 요금제를 선택, 개통할 수 있다. 대부분의 통신업체가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 있으므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미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교, 파악하도록 권장한다.

FREE 등 저가 인터넷 업체는 한 달 15유로 무한정 인터넷 사용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광케이블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어, 건물 주인에게 광케이블이 건물까지 들어와 있는지 문의한 후 가입할 수 있다. 프랑스의 인터넷망은 ADSL 수준이어서 상당히 느린 편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대용량 비디오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면 광케이블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설치비용은 무료다. 최근 들어 한국 내 SIM 카드 사용 휴대폰의 경우, Pre-paid 등의 카드를 구입해 현지에서 별도의 계약 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단기 체류 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전압/플러그

프랑스 전압은 220V, 주파수는 50Hz, 플러그는 2구 콘센트이다. 한국의 경우 220V, 60Hz, 2구 콘센트이다. 한국산 제품 대부분의 콘센트는 문제없이 잘 작동하지만, 간혹 2구의 단단한 짧은 막대(피뢰선용)가 있는 모양의 콘센트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변압기를 가져오는 것을 권고한다. 또한 한국에서의 주파수는 60Hz이기 때문에 50Hz/60Hz 겸용이 아닌 경우, 현지에서 사용한다면 오래 쓰지 못해 고정 또는 못 쓰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 전자제품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전열기구나 모터를 돌리는 제품은 작동하지 않는다.

식수

프랑스의 기본 수도물은 석회수이다. 현지인들은 석회수 정수 필터 '브리타(Brita)'를 구매하여 정수된 물을 마시거나, 마트에서 구입하거나(Volvic, Cristaline, Evian 등), 싱크대 혹은 화장실의 물(석회수)을 이용한다. 싱크대 혹은 화장실의 물을 마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들에게는 낯설고 거부감이 들 수 있으나, 현지인들은 이를 개의치 않으며 식당에서도 대중적으로 흔하게 마신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프랑스에서 중고차 가치가 좋은 자동차는 독일 자동차로, 그중에서도 폴크스바겐 차량이 많이 선호됐다. 그러다 디젤 게이트 사건 이후 디젤차 비중이 큰 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한 선호도도 감소하고 있다. 생산자 보증 기간이 긴 현대·기아차량이나 도요타 차량도 선호되고 있다. 차량 할부 구입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차량 구입 시 보통 차량 가격의 15~25%가량을 납부한 후 차액에 대해 할부 납부가 가능하나, 차량 할부 시에는 현지인 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리는 1%~2.2% 정도이나 전체 차액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 매월 균등 납부하도록 돼 있어 실제 할부 금리가 높으므로 자금 여유가 있을 시 일시불 구입이 훨씬 유리하다.

프랑스는 신차 구매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고, 친환경 차 구매 시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의 정책으로 하이브리드 카 및 전기차 구입을 장려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특히 WLTP(국제표준 자동차 여비측정 시스템) 시스템이 적용되어 탄소세가 크게 인상됐다. 또한 2020년 5월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80억 유로 규모의 구제방안을 공개했으며, 이 안에는 전기차 구매 시 7천 유로까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유럽연합국가들이 모두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어,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구매 지원방안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차량가격

프랑스는 부가가치세가 20%여서 자동차 가격이 인근 EU 국가에 비해 비싼 편이다.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인 르노(Renault) 및 푸조(Peugeot)의 현지 판매 모델과 가격 수준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르노(Renault): www.renault.fr
- 푸조(Peugeot): www.peugeot.fr

외국 브랜드 신차 구매 가격은 각사의 홈페이지나 아래 자동차 전문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www.autoplus.fr
- www.largus.fr
- voiture.autojournal.fr
- www.voiture-neuve.com

운전면허 취득

면허증의 경우, 한국 면허증과 함께 1년 유효 국제면허증을 받아와야 한다. 차량 구입과 현지 면허증 교부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학생이나 외교관은 국내 면허증(공증 번역본도 지참)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반드시 국내 면허증 원본과 공증인이 붙어 번역한 번역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학생이나 외교관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장기 비자나 거주증을 소지한 자는 체류증 발급일 기준 185일 부터 1년 사이에 국내 면허증과 현지 면허증을 교환해야 한다.

현지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 경시청(prefecture)을 통해 면허증을 신청하고 교부받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통상 본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했다가 프랑스를 떠날 때 다시 찾아가는 방식이다.

면허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면허증 교환용 서류(cerfa n°14879*01), 국내 면허증 앞뒷면 컬러 복사판, 국내 면허증 공인 번역서, 소정의 증명사진 4매, 거주증의 앞뒷면 복사본 또는 장기체류 비자를 받은 경우, 이민국 입국확인 소인이 찍힌 여권의 사본 등이다.

면허증 교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지역 경시청에 따라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상이하다. 국내 면허증 교부 일자가 3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 면허증도 수속용 면허증으로 교부해주고, 만 3년이 지나면 정상 면허증으로 교환해준다. 교환 수수료도 지역 경시청별로 상이하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LCL: 1863년 리옹(Lyon)에서 '크레딧 리요네(Crédit lyonnais)'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돼 2005년 현재의 LCL로 자리 잡았으며, 아래의 BNP, Société Générale과 함께 프랑스 3대 은행 중 하나이다.

- BNP Paribas: 2000년 프랑스의 파리국립은행 BNP(Banque Nationale de Paris S.A.)와 파리바(Paribas) 은행의 합병으로 설립됐으며, 파리에 본사가 소재한다.

- Société Générale: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 하나로 1864년 제2제정 시절 설립됐으며, 본사는 프랑스 파리 근교 오-드-센(Haut-de-Seine)의 뇌이(Neuilly)시의 라 데팡스(La Défense)에 위치한다.

계좌 개설방법

원칙적으로 주택임차 계약서가 있어야만 시중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일부 은행은 임시 숙소 주소만으로도 계좌 개설을 해주기도 하나,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주택임차 계약서와 여권이 필요하며 부부 공동명의로 계좌도 개설할 수 있다. 그 밖의 서류는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을 미리 접촉해 파악한 후 준비해가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개인마다 담당자가 지정되므로 담당자 지정을 요청한 후 면담 약속을 잡아야 한다.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 계좌 개설 상담을 진행한다. 계좌는 바로 개설되며 신용카드와 수표책은 신청 1주~3주 후 통보를 받으면 직접 가서 찾아야 한다.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발급 전 혹은 후에 우편으로 통보해준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American School of Paris

도시명	Saint Cloud(생클루)
커리큘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18세까지)의 국제학교. 각 과정별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이 진행됨
학비	유치원: 18,820유로 1학년: 24,340유로 2~5학년: 30,400유로 6~8학년: 34,945유로 9~13학년: 34,730유로. 이외에 기성회비, 특별활동비, 스쿨버스이용비, 영어수강비 등이 추가될 수 있음
홈페이지	https://www.asparis.org
비고	미국계

o Rainbow School Pari

도시명	가렌 콜롬브(Garenne Colombe)
커리큘럼	유아 및 초등학교 과정(12세까지)의 국제학교로, 전 과정 몬테소리 교육철학을 따라 수업이 진행됨. 매주 수요일은 야외 수업 및 현장 학습이 이루어짐
학비	유아반: 6,450유로 예비유치원~유치원: 9,390유로 1학년~5학년: 11,190유로
홈페이지	http://www.rainbowschoolparis.com
비고	영국계

o International School of Paris

도시명	파리
커리큘럼	3세부터 18세까지(유치원-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마련돼 있음. 유아반부터 5학년까지 'Primary Years Programme', 6학년부터 10학년까지 'Middle Years Programme', 11학년부터 12학년까지 'Diploma Programme'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이 진행됨.
학비	유아반~예비유치원: 21,800유로 유치원~5학년: 26,600유로 6학년~9학년: 30,900유로 10학년~12학년: 33,900유로

홈페이지	http://www.isparis.edu
------	---

〈자료원 : International Schools Database〉

- 현지학교

○ 앙리 4세 고등학교(Henri-IV)

도시명	파리(Paris)
커리큘럼	바칼로레아(Baccalaureat) 시험 응시 부문인 인문(L), 사회경제(ES), 자연과학(S)로 나뉜 계열 공부
학비	없음
홈페이지	https://lyc-henri4.scola.ac-paris.fr
비고	중세 수녀원(Sainte-Genevieve)의 건물 내에 1804년 설립한 명문 공립고등학교(프랑스 마지막 국왕 루이 필립의 왕자들이 다녔음)로 대도서관 등이 유명

○ 루이 르 그랑 고등학교(Louis Le Grand)

도시명	파리(Paris)
커리큘럼	바칼로레아(Baccalaureat) 시험 응시 부문인 인문(L), 사회경제(ES), 자연과학(S)로 나뉜 계열 공부
학비	없음
홈페이지	https://www.louislegrand.fr/
비고	리세 루이르그랑 또는 루이 대왕 고등학교는 프랑스의 중등학교인 리세임. 과거에는 콜레주 드 클레르몽으로 불렸으나, 루이 대왕으로 불린 루이 14세가 이 학교를 후원하게 되면서 이름을 현재와 같이 바꾸었음. 1563년에 설립되었으며, 소르본 대학 등이 있는 카르티에 라탱의 중심에 있음. 프랑스 소수 정예 엘리트 대학인 그랑제콜(Grands Ecoles) 준비 교육기관이기도 함.

○ 생 루이 고등학교(Saint Louis)

도시명	파리(Paris)
커리큘럼	PCSI(물리 화학 과학 공학), MPSI(수학 물리 과학 공학), ECS(경영 경제 과학), BCPST(생물 화학 물리 지구과학) 중 진학 희망하는 그랑제콜에 따라 선택 공부
학비	없음
홈페이지	https://lycee-saintlouis.fr/
비고	프랑스 소수 정예 엘리트 대학인 그랑제콜(Grands Ecoles) 준비 교육기관이기도 함

〈자료원 : 매거진 Etudiant〉

마. 병원

◦ American Hospital of Paris

도시명	뇌이 쉬흐 쉐(Neuilly Sur Seine)
주소	63, Bd Victor Hugo 92200 Neuilly-sur-Seine
전화번호	33 1 4641 2525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미국계 종합병원으로 영어 통용

◦ Groupe inter Hospitalier Bichat-Claude Bernard

도시명	파리(Paris)
주소	46 Rue Henri Huchard
전화번호	33 1 4025 8080
진료과목	비만외과, 갑상선외과, 심근경색, 뇌졸중, 심장판막, 관상동맥, 경동맥, 항문과
비고	수도권(일드프랑스/Ile de France) 지방 2대 우수 병원으로 선정

◦ Hôpitaux universitaires La Pitié-Salpêtrière(라삐티에 샬페트리에르 대학병원)

도시명	파리(Paris)
주소	47-83, boulevard de l'hôpital, 75013 Paris
전화번호	33 1 4216 0000
진료과목	전 과목(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비뇨과, 산부인과, 노인과, 장기이식과 등)
비고	2018년 프랑스 5대 우수 종합병원

◦ Hopital europeen Georges Pompidou(조르즈 뽕삐두 유럽 병원)

도시명	파리(Paris)
주소	20, rue Leblanc, 75015 Paris
전화번호	33 1 5609 2000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노인과 등
비고	현대식 종합병원

〈자료원 : 시사매거진 L'Express, L'Actu〉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갤러리 라파예트(Galleries Lafayette)

도시명	파리(Paris)
주소	40 Boulevard Haussmann, 75009 Paris
홈페이지	http://www.gallerieslafayette.com
비고	고급 백화점으로 화려한 천장 장식과 파리 전경이 한 눈에 보이는 전망대로 유명

◦ 르 봉 마르세(Le Bon Marché)

도시명	파리(Paris)
주소	24 Rue de Sèvres, 75007 Paris
홈페이지	http://www.24sevres.com/fr-fr/
비고	프랑스 최초의 백화점으로 1층의 식품관이 유명

◦ 뽀렝땅 오스만(Printemps Haussmann)

도시명	파리(Paris)
주소	64 Boulevard Haussmann, 75009 Paris
홈페이지	https://www.printempsfrance.com/
비고	파리 중심가 갤러리 라파예트 옆에 위치한 고급 백화점

◦ 레 까트르 땡(Les Quatre Temps)

도시명	퐁투(Puteaux)
주소	parvis de la défense, 92800 Puteaux
홈페이지	http://www.les4temps.com
비고	라데팡스(La Défense)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 쇼핑몰

〈자료원 : 프랑스 유통업체 디렉토리〉

- 식품점

◦ 코스트코(Costco)

도시명	빌봉 쉬리베트(Villebon-sur-Yvette)
주소	3 avenue de Bréhat, 91140 Villebon-sur-Yvette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전자 제품, 의류 등
비고	대용량 식료품, 전자 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 피카르(Picard)

도시명	파리(Paris)
주소	6 Rue du 4 Septembre, 75002 Paris
취급 식료품	각종 냉동 식료품
비고	- 채소부터 디저트까지 냉동처리 식료품 판매 - 프랑스 전역에 매장 보유

○ 탕 프레르(Tang Frère)

도시명	파리(Paris)
주소	48 Avenue d'Ivry 75013
취급 식료품	아시아 식료품
비고	중국 식품 위주의 아시아 식료품 마트로 한국 식품 또한 찾아볼 수 있음

〈자료원 : 유통업체 디렉토리〉

- 기타 편의시설

○ CMG Sports Club One

도시명	파리
주소	147 bis Rue Saint Honore 75001 Paris
홈페이지	https://www.cmgsportsclub.com
소개	프랑스 체인 피트니스 센터

○ YOGA Bikram Paris

도시명	파리
주소	17 Rue du Faubourg Montmartre, 75009 Paris
홈페이지	https://www.bikramyogaparis.com
소개	Bikram 요가의 특징은 26분의 자세로 구성된 90분 수업을 섭씨 40도까지 가열된 방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기적인 휴식이 있고 물을 자주 마실 기회가 있음.

○ Piscine Saint Germain

도시명	파리
주소	12 Rue Lobineau, 75006 Paris
홈페이지	https://www.paris.fr/equipements/piscine-saint-germain-2919

소개	파리 중심가 스포츠센터 지하에 소재하는 수영장으로 길이 25미터 폭 12.5미터 깊이 0.8미터에서 3.6미터, 물온도 섭씨 27도의 아담한 수영장이며 1회 입장료는 3.5유로, 입장카드 10장 1묶음은 28유로, 3개월 정기가입료는 43유로임.
----	---

〈자료원 : 해당 업체 홈페이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	2021-01-01	토, 일요일이어도 대체 휴일 없음
부활절	2021-04-05	춘분(3월 21일) 이후 보름달 직후의 일요일과 월요일
노동절	2021-05-01	토, 일요일이어도 대체 휴일 없음
2차대전 승전기념일	2021-05-08	토, 일요일이어도 대체 휴일 없음
예수승천일	2021-05-13	부활(일요일) 후 40일
성령강림절	2021-05-24	부활(일요일) 후 50일(예수승천일 후 10일)
혁명기념일	2021-07-14	1789년 7월 대혁명 기념일 토, 일요일이어도 대체 휴일 없음
성모승천일	2021-08-15	토, 일요일이어도 대체 휴일 없음
만성절	2021-11-01	토, 일요일이어도 대체 휴일 없음
1차대전 종전기념일	2021-11-11	토, 일요일이어도 대체 휴일 없음
성탄	2021-12-25	토, 일요일이어도 대체 휴일 없음

〈자료원 :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www.service-public.fr)〉

9. KOTRA 무역관 안내

파리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19 Avenue de l'Opera, 75001 Paris
- 전화번호: 33-(0)1-5535- 8888
- 이메일: paris@kotra.or.kr
-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KBC/paris>

공항-무역관 이동

- 샤를드골(CDG) 또는 오를리(Orly) 공항에서 전철 이용 시
 - 각 공항에서 RER B선 탑승,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Chatelet Les Halles 역에서 Gare Saint Lazare 역 방향 지하철(Metro) 14호선으로 환승 후, 첫 번째 역인 Pyramides에서 하차해 출구(Sortie)로 나오면 파리무역관이 위치한 오페라(Avenue de l'Opera) 가의 중간지점으로 나오게 된다.
- 샤를드골 공항에서 공항버스(Roissy 버스(루아시버스)) 이용 시
 - 샤를드골 공항에서 Roissybus 탑승, 종점 Opera 옆길 Rue Scribe에서 하차한 후, 오페라 하우스 건물 앞쪽으로 돌아 나와 Avenue de l'Opera로 이동한다. Avenue de l'Opera에서 루브르 박물관 방향(남쪽)으로 약 300m 거리에 파리무역관이 위치해있다.
- 오를리 공항에서 공항버스 이용 시
 - 오를리 공항에서 오를리버스(Orlybus) 탑승, 종점 Denfert Rochereau(덩페르로슈로)에서 하차, 5미터 동쪽에 위치한 Denfert Rochereau역에서 CDG공항 행 또는 Mitry-Claye행 RER B선을 타고 Les Halles에서 하차 한다. Saint Lazare행 지하철 14호선을 타고 피라미드(Pyramides)에서 내려 왼쪽의 출구(Sortie)로 나오면 파리무역관이 위치한 오페라(Avenue de l'Opera)로 나오게 된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